1 서문 / 최초규정 및 정의

▌서문 주요 내용

■ 양국간 우애·협력 관계 강화, 지속적 경제 성장 및 빈곤축소를 위한 경제개발 진흥,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확보, 투명성 증진 및 부패 방지, 환경 및 인권 보호, WTO 등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APEC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 확인 등

▌최초규정 및 정의

■ 최초규정에서는 여타 협정과의 관계 및 당사국의 지방정부 협정 이행 보장의무를 규정

◦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모두 가입한 여타 협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국제법 원칙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즉시 협의

■ 정의 조항에서는 협정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지방·지역 정부, 관세, 기업, 조치, 국민, 영역 및 기타 원용된 각종 협정의 정의를 규정

◦ 국민(national)
- 한국 : 국적법의 의미 내에서의 국민(a national within the meaning of the National Act)
- 페루 : 페루 헌법 및 법령에 따라 페루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 또는 영주권자

◦ 영역(territory)

– 한국 : 주권을 행사(exercise sovereignty)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과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may exercise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영해 밖의 해양 지역

– 페루 :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 도서, 해양 지역 및 상공

※이 협정에 포함된 '영역' 용어는 이 협정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적용

◦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구 분	중앙 정부(central level of government)	지역 정부(regional level of government)	지방 정부(local level of government)
한국	중앙(central) 정부	–	지방자치법상 지방 정부
페루	중앙(national) 정부	헌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지역 정부	지방자치단체

2 상 품

▌개 요

- 관세의 단계적 철폐, standstill 등 상품의 시장접근 관련 각종 의무사항은 협정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 및 양허유형은 부속서에 규정
- 중고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수출입제한 금지 조항상 예외를 인정
-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우리측만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

▌상품 협정문

1. 관세의 철폐 (제2.3조)

-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각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
  - ◦ 단, 중고차를 제외한 중고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FTA 특혜관세 부여 거부 가능

※ 페루측 FTA별 중고품 관세철폐
- 한·페루 FTA : 중고차(HS 8703)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되, 여타 중고품은 FTA 특혜관세를 미적용
- 페루·중국 FTA : 모든 중고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미적용
- 페루·미국 FTA : 모든 중고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

2.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2.14조 및 부속서 2C)

- 우리는 부속서 2C에 규정된 일부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 설정된 물량(trigger level)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형태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 Agricultural Safeguard) 발동 가능

  ※ ASG 발동 가능 품목 :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체다 치즈, 천연꿀, 맨더린, 녹두·팥 등 7개(14개 세번)

- 단,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을 통해 인상되는 관세율은 최혜국(MFN) 실행세율 초과 불가

-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① 한·페루 FTA에 의한 양자 세이프가드, ② WTO 협정에 의한 다자 세이프가드, 또는 ③ WTO 농업협정에 의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동시 발동 불가

3.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금지 예외 (부속서 2A)

- 페루의 중고품 수입 관련 조치 및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승인된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2.2조) 및 수출입제한 금지(제2.8조) 의무 적용 배제

  ※ 페루는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에 따라, 국민의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중고품(중고차, 타이어 등)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협정 부속서에 명시

4. 상품위원회 설치 (제2.17조)

- 양국간 교역 진흥 등을 위하여 상품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년 개최
  -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 요청시, 상품(제2장), 원산지 규정(제3장), 원산지 절차(제4장) 또는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제5장)의 문제 고려를 위해 위원회 개최

▌상품 양허

■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해 향후 양국간 교역 증진 기대

※ 한·페루 교역(2009년) : 총 15억6천만불 (對페루 수출 6억4천만불, 수입 9억2천만불)

■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

※ 수입액 기준, 양측 모두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는 97.4%, 페루는 98.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

한 · 페루 FTA 전체상품 양허수준 비교

양허단계	우리 양허				페루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	10,044	84.5%	915,668	94.2%	5,001	67.9%	464,927	74.2%
3년	223	1.9%	407	0.0%	58	0.8%	312	0.0%
4-5년	609	5.1%	18,655	1.9%	936	12.7%	90,540	14.4%
(5년내소계)	10,876	91.5%	934,730	96.2%	5,995	81.3%	555,780	88.6%
7-8년	170	1.4%	12,464	1.3%	51	0.7%	3,656	0.6%
10년	524	4.4%	24,692	2.5%	1,240	16.8%	67,512	10.8%
(10년내소계)	11,570	97.4%	971,886	100.0%	7,286	98.9%	626,948	100.0%
10년 초과	202	1.7%	0	0.0%	79	1.1%	0	0.0%
계절관세	2	0.0%	0	0.0%	-	-	-	-
현행관세/양허제외	107	0.9%	1	0.0%	5	0.1%	0	0.0%
총합계	11,881	100.0%	971,887	100.0%	7,370	100.0%	626,948	100.0%

* 품목수는 HS 2010 기준, 수입액은 2007-2008 평균 금액 기준임
** ASG 적용품목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 관세 즉시철폐 비중 등으로 평가시 우리의 시장개방 수준이 페루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한·페루간 교역구조, 산업경쟁력 차이 등을 감안시, 실제로는 우리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된 것으로 평가

◦ 우리의 對페루 수입 중 90% 이상이 아연광, 동광, 철광 등 광물 제품으로 한·페루 FTA 체결로 인한 추가 개방 부담이 크지 않음.

※ 우리는 對페루 수입액 중 92%가 기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추가 개방 부담은 8%에 국한되는 반면, 페루는 승용차, 가전제품을 포함한 對한국 수입액의 2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추가 개방

■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에 앞서 페루 시장을 선점하고, 한·칠레 FTA에 이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 확보

◦ 우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페루와 FTA를 체결한 중국이나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에 비해 유리한 對페루 수출 여건 확보

※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 관련, 페루는 중국·페루 FTA에서는 전 품목(30여개)를 10년 장기 철폐하였으나, 한·페루 FTA에서는 대형차 3개 세번을 즉시 철폐, 중형차 3개 세번을 5년으로 조기 철폐하였으며, 이는 페루·미국 FTA시 대형차 3개 세번만을 즉시 철폐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

■ 우리 민감 농·수산물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최대한 확보

◦ 페루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 반면, 우리는 현행 관세유지,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

※ 양측은 모두 쌀을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한 · 페루 상품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한국 양허		양허유형	페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아연광, 연광, 동광, 니켈광, 철광, 나프타, 고철, 원유, 석탄, 윤활유, 금, 은, 보석,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카메라, 시계, 건전지, 가죽제품(벨트 등), 모피의류, 견사, 신사복, 언더셔츠, 모자, 커피, 설탕(원당), 향신료(샤프란)	10,044	즉시 철폐	5,001	대형 승용차(3개 세번), TV(칼라,흑백), VCR, 전기밥솥, 라디오카세트, 일부 자동차부품, 카스테레오, 무선전화기, 선박, 화물자동차, 타이어, 라이터, 손목시계, 오락용구, 기타 합성섬유, 녹차, 배, 사과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아보카도우(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식빵, 비스킷, 어류통조림(정어리)	223	3년 철폐	58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	–	4년 철폐	2	세탁기
연괴, 스웨터(면제) 코르크, 바나나, 라임, 포도주, 캐비아 대용물, 어류의 유지	609	5년 철폐	934	중형 승용차(3개 세번), 진공청소기, 의료위생용품, 종이제품, 설탕(정당), 필터담배, 맥주, 위스키, 인삼
옥수수(종자용) 소모사, 붕장어(냉동필레트)	170	7년 철폐	40	일부 철강제품
–	–	8년 철폐	11	장신구, 황산
아연괴, 일부 연괴,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소시지, 오징어(냉동, 자숙,조미,건조), 고등어(냉동) (ASG) 닭고기(냉장), 오리고기(냉동), 체다치즈, 무당연유, 녹두·팥	524	10년 철폐	1,240	기타 승용차, 냉장고, 고무관, 모포류, 혼방면사, 폴리에스터직물, 신발류, 부직포, 인쇄용지, 접착제, 연축전지, 비누, 섬유판, 오리고기, 돼지고기
난황	2	12년 철폐	24	쇠고기(냉동 절단), 설탕(원당)
발효주정	1	15년 철폐	20	버터, 발효유, 빙과류
돼지고기(삼겹살), 버터, 녹차, 설탕(정당), 참기름, 필터담배 (ASG) 천연꿀, 맨더린	199	16년 철폐	–	–
–	–	17년 철폐	35	닭고기, 치즈
포도, 오렌지	2	계절 관세	–	–
쇠고기(신선,냉장,냉동), 고추, 마늘, 양파, 감귤(온주밀감), 보리, 사과, 배, 탈·전지분유, 치즈, 인삼류, 대두, 밤, 대추, 민어(냉동), 명태(냉동), 오렌지주스	91	현행관세 유지	–	–
쌀	16	양허제외	5	쌀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1. 공산품 (임산물 포함)

■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공산품 시장을 개방

◦ 양측 모두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내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는 99.6%, 페루는 88.6%에 해당하는 공산품(임산물 포함)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는 98.6%, 페루는 80.4%에 해당하는 공산품(임산물 포함)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철폐

■ 우리의 對페루 공산품 수입은 자원 광물(아연광, 연광, 동광, 철광 등)에 집중되어 있고 여타 공산품도 페루의 경쟁력이 높지 않아, 한·페루 FTA로 인한 실질적 추가 개방효과는 제한적

한 · 페루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비교

양허단계	우리 양허				페루 양허				양허단계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	9,624	96.8%	896,617	98.5%	4,182	67.0%	464,868	74.2%	즉시
3	56	0.6%	0	0.0%	51	0.8%	312	0.0%	3
4	–	–	–	–	2	0.0%	281	0.0%	4
5	116	1.2%	10,346	1.1%	780	12.5%	90,238	14.4%	5
(5년내)	9,796	98.6%	906,964	99.6%	5,015	80.4%	555,699	88.6%	(5년내)
7	75	0.8%	3,381	0.4%	38	0.6%	2,420	0.4%	7
8	–	–	–	–	11	0.2%	1,236	0.2%	8
10	69	0.7%	0	0.0%	1,174	18.8%	67,511	10.8%	10
합계	9,940	100.0%	910,345	100.0%	6,238	100.0%	626,866	100.0%	합계

■ 페루는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페루 관세율 9%, 07-08년 평균 對페루 수출 9천7백만불) 중 우리 주요 수출관심 6개 품목(7천 2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또는 5년 철폐

◦ 대형차 3개 세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고, 중형차 3개 세번에 대한 관세는 5년 철폐

◦ 기타 승용차 세번에 대한 관세는 10년 철폐

※ 페루 기체결 FTA에서 자동차 양허현황
- 페루·중국 FTA : 자동차 전 품목을 10년 철폐
- 페루·미국 FTA : 대형차 3개 품목은 즉시 철폐, 나머지는 10년 철폐

■ 각종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페루측 고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업계의 對페루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칼라TV(페루 관세율 9%, 07-08년 평균 對페루 수출 990만불)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세탁기(17%, 28만불)는 4~5년 철폐, 냉장고(17%, 279만불)는 5~10년 철폐

※ 페루 주요 가전제품 관세 철폐안
- 칼라TV : 對한국 즉시 철폐 vs. 對중국 5년 철폐
- 세탁기 : 對한국 4~5년 철폐 vs. 對중국 즉시 철폐
- 냉장고 : 對한국 5~10년 철폐 vs. 對중국 16년 비선형 또는 10년 철폐

한 · 페루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순위	우리 양허 (對페루 주요 수입품)				페루 양허 (對페루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8 평균	우리 양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07-08 평균	페루 양허
1	아연광과 그 정광	0%	406,525	즉시	(가솔린 1500cc이상 3000cc이하)기타 조립 자동차	9%	55,246	5년
2	동광과 그 정광	0%	307,814	즉시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0%	43,006	즉시
3	연광과 그 정광	0%	124,312	즉시	에이치형강	0%	23,569	즉시
4	자철광	0%	24,366	즉시	폴리에틸렌(비중이 0.94이상인 것)	0%	21,129	즉시
5	나프타	0%	20,477	즉시	디젤 2	0%	19,390	즉시
6	(몰리브덴광)기타	0%	4,121	즉시	(가솔린 1000cc초과 1500cc이하)기타 조립 자동차	9%	17,689	10년

순위	우리 양허 (對페루 주요 수입품)				페루 양허 (對페루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8 평균	우리 양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07-08 평균	페루 양허
7	(정제한 동) 음극과 음극의 형재	3%	3,430	5년	(디젤)16인 이하(운전자 포함)수송용 자동차	0%	17,161	즉시
8	(섬수모사)코움한 것	8%	3,142	7년	(디젤)총중량이 5톤 이하인 기타 화물자동차	0%	15,305	즉시
9	(섬수모)기타	0%	1,490	즉시	폴리프로필렌	0%	14,471	즉시
10	(남성아우터셔츠) 면제의 것	13%	1,396	5년	도데실벤젠	0%	13,874	즉시
	(10대 수입 소계)		**897,074**		**(10대 수출 소계)**		**240,840**	
	공산품 수입 합계		910,345		공산품 수출 합계		626,866	

2. 농 산 물

■ 페루는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대부분 농산물의 관세를 10년내 철폐

■ 우리는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서 양허제외 및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적 조치 확보

◦ 【양허제외 및 현행관세유지】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치즈, 인삼류 등(89개 세번)도 추가개방 없이 현행관세 유지

◦ 【계절관세】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중 현행관세 유지), 오렌지(11월~4월중 현행관세 유지)

◦ 【농산물세이프가드】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체더치즈, 천연꿀, 맨더린, 녹두·팥

등 7개 품목(HS 10단위 14개 세번)

◦ 여타 202개 민감 농산물에 대해 10년 초과 장기 관세철폐

■ 우리는 이미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의 관세는 조기철폐

◦ 우리의 對페루 농산물 수입 중 94.1%를 차지하는 커피(우리 관세율 2%, 07-08년 평균 對페루 수입 1,851만불) 관세는 즉시철폐

※ 페루측 관심 농산물에 대한 우리 양허

· 커피(우리 관세율 2%): 對페루 즉시 철폐 vs. 對칠레 즉시 철폐

· 아스파라거스(20~27%): 對페루 3~5년 철폐 vs. 對칠레 5년 철폐

· 바나나(30%): 對페루 5년 철폐 vs. 對칠레 DDA 이후 논의

한 · 페루 FTA 농산물 양허수준 비교

양허단계	우리 양허				페루 양허				양허단계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	377	25.2%	19,044	96.8%	663	69.0%	60	72.5%	즉시
3	47	3.1%	359	1.8%	-	-	-	-	3
5	352	23.5%	217	1.1%	149	15.5%	21	25.9%	5
(5년내)	776	51.9%	19,619	99.7%	812	84.5%	81	98.4%	(5년내)
7	28	1.9%	30	0.2%	-	-	-	-	7
10	383	25.6%	19	0.1%	65	6.8%	1	1.6%	10
12	2	0.1%	0	0.0%	24	2.5%	0	0.0%	12
15	1	0.1%	0	0.0%	20	2.1%	0	0.0%	15
16	199	13.3%	0	0.0%	35	3.6%	0	0.0%	17
계절관세	2	0.1%	0	0.0%	-	-	-	-	계절관세
현행관세	89	5.9%	0	0.0%	-	-	-	-	현행관세
양허제외	16	1.1%	1	0.0%	5	0.5%	0	0.0%	양허제외
합계	1,496	100.0%	19,670	100.0%	961	100.0%	83	100.0%	합계

한·페루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순위	우리 양허 (對페루 주요 수입품)				페루 양허 (對페루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8 평균	우리 양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07-08 평균	페루 양허
1	커피 (볶지않은것/ 카페인미제거)	2%	18,511	즉시	기타 조제식료품	0%	28	즉시
2	기타축산물부산물 (동물의 사체)	8%	457	즉시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0%	18	즉시
3	기타과실.견과류 (냉동)	30%	132	5년	기타 주류	9%	13	5년
4	아스파라거스 (신선/냉장)	27%	127	3년	기타 음료	9%	6	5년
5	식물성점질물기타	8%	108	3년	기타 채소종자	0%	3	즉시
6	기타 식물 (향료,의료용등)	8%	81	3년	기타 베이커리제품	0%	3	즉시
7	기타 채소종자	0%	68	즉시	기타 파스타	0%	3	즉시
8	기타 식물성액즙과엑스	8%	43	3년	기타 해초류	9%	2	5년
9	기타 설탕과자	8%	36	5년	혼합조미료	0%	1	즉시
10	과실견과기타 (조제저장처리)	45%	30	7년	조란을 넣은 파스타	0%	1	즉시
	(10대 수입 소계)		**19,593**		**(10대 수출 소계)**		**77**	
	농산물 수입 합계		19,670		농산물 수출 합계		83	

3. 수산물

- 페루측은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대부분 수산물을 5년내 관세철폐
- 우리는 주요 민감 수산물 141개에 대하여 추가개방 없는 현행관세 유지 또는 7-10년의 장기 관세철폐 확보
  - 냉동 명태, 냉동 민어(2개 세번) : 현행 관세 유지
  - 고등어, 홍어, 갈치, 조기, 전갱이, 볼낙 등(이상 냉동) 등 (139개 세번) : 7~10년 철폐

■ 페루측의 주요 관심품목인 오징어 중 對페루 수입이 많은 냉동(우리 관세율 22%), 조미(20%), 자숙(20%) 등 주요 품목은 10년으로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

◦ 단, 對페루 수입이 많지 않은 염장(우리 관세율 10%), 밀폐 오징어(20%)의 관세는 5-7년내 철폐

※ 오징어 주요 품목에 대한 우리 양허 비교
· 냉동, 건조, 조미, 자숙 오징어: 對페루 10년 vs. 對칠레 5-10년 철폐
· 염장, 밀폐용기 오징어: 對페루 5-7년 vs. 對칠레 즉시 철폐

한 · 페루 FTA 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양허단계	우리 양허				페루 양허				양허단계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	43	9.7%	7	0.0%	156	91.2%	0	100.0%	즉시
3	120	27.0%	48	0.1%	7	4.1%	0	0.0%	3
5	141	31.7%	8,092	19.3%	5	2.9%	0	0.0%	5
(5년내)	304	68.3%	8,147	19.5%	168	98.2%	0	100.0%	(5년내)
7	67	15.1%	9,052	21.6%	2	1.2%	0	0.0%	7
10	72	16.2%	24,673	58.9%	1	0.6%	0	0.0%	10
현행관세	2	0.4%	0	0.0%	-	-	-	-	현행관세
총합계	445	100.0%	41,872	100.0%	171	100.0%	0	100.0%	총합계

한·페루 주요 수입 수산물 양허

순위	우리 양허 (對페루 주요 수입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8 평균	우리 양허
1	연체동물기타 (자숙오징어 포함)	20%	13,572	10년
2	붕장어 (냉동필레트)	10%	8,177	7년
3	오징어 (냉동)	22%	7,861	10년
4	캐비아 대용물	20%	5,016	5년(비선형)
5	조미오징어	20%	2,833	10년
6	어류 유지와 분획물	3%	1,624	5년
7	어류 분·조분 및 펠리트	5%	670	5년
8	냉동어란 (명란 이외 기타)	10%	648	5년
9	연육 기타 (냉동)	10%	373	7년
10	오징어 (건조)	10%	369	10년
	(10대 수입 소계)		**41,143**	
	수산물 수입 합계		41,872	

※ 수산물 관련, 우리의 對페루 수출은 거의 전무

참고 1 페루측 주요 공산품 양허수준 비교

품목	관세율	한·페루 FTA	페루·중국 FTA	페루·미국 FTA
승용차	9%	대형차 3개 즉시 중형차 3개 5년 나머지 10년	모두 10년	대형차 3개 즉시 나머지 10년
화물자동차	0%	즉시	즉시	즉시~10년*
자동차부품	0%	즉시	즉시	즉시~7년**
선박	0%	즉시	즉시	즉시
TV (칼라/흑백)	9%	즉시	5년	즉시
냉장고	17%	10년	10~16년	5~10년
에어콘	0%	즉시	즉시	즉시
세탁기	0~17%	즉시~5년	즉시	즉시
진공 청소기	0~9%	즉시~5년	즉시~5년	즉시
합성섬유	0~17%	즉시~10년	즉시~16년 일부 현행관세유지	즉시
의류 (편물제·직물제)	9~17%	5~10년	5~16년 일부 현행관세유지	즉시

* 페루·미국 FTA 체결 당시 페루의 화물자동차 관세는 4-7%
** 페루·미국 FTA 체결 당시 페루의 자동차부품 관세는 4-12%

참고 2 우리측 주요 농·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품목	관세율	한·페루 FTA	한·칠레 FTA	한·미국 FTA
쌀	-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쇠고기	신선냉장냉동 40%	현행관세유지	DDA 이후 논의 (일부 세번 TRQ 설정)	15년+ASG
	식용설육 18%	16년	5~10년	15년
돼지고기	냉장 22.5%	냉장 삼겹살/기타 16년	냉장 삼겹살/기타 10년	냉장 삼겹살/기타 10+ASG
	냉동 25%	냉동 삼겹살 16년 냉동 기타 10년	냉동 삼겹살/기타 10년	냉동 삼겹살/기타 2014.1.1까지 철폐
	식용설육 18%	16년	10년	2014.1.1까지 철폐
닭고기	냉장 18%	10년 (주요 세번 ASG 설정)	10년	10~12년
	냉동 20%	10년	절단하지않은것 10년 / 절단육은 DDA 이후 논의 +TRQ	10~12년
양념채소	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	주요 세번은 현행관세유지	주요 세번은 DDA 이후 논의	주요 세번은 15년+ASG
아스파라거스	신선냉장 27%	3년	5년	즉시
	조제저장 20%	3년	5년	10년
	설탕저장 20%	5년	5년	5년
커피	볶지 않은 것 2%	즉시	즉시	즉시
포도	45%	계절관세	계절관세	계절관세
감귤	온주밀감 144%	현행관세유지	DDA 이후 논의	15년
	맨더린 144%	16년+ASG	DDA 이후 논의 + TRQ	15년
오렌지	50%	계절관세	DDA 이후 논의	계절관세 + TRQ
분유	전지분유 176%	양허제외	DDA 이후 논의	현행관세유지 + TRQ
	탈지분유 176%	양허제외	DDA 이후 논의	현행관세유지 + TRQ
	조제분유 36%	10년	16년	10년 + TRQ
	혼합분유 36%	10~16년	DDA 이후 논의 (일부 세번 TRQ 설정)	10년
포도주	15%	5년	5년	즉시
고등어(냉동)	10%	10년	10년	12년(비선형)
민어(냉동)	53%	현행관세유지	5년	12년(비선형) + TRQ
명태(냉동)	30%	현행관세유지	10년	15년(비선형) + TRQ
오징어	냉동 22%	10년	5년	10년(비선형)
	건조 10%	10년	5년	10년
	조미 20%	10년	5년	10년
	자숙 20%	10년	10년	3년

3 원산지 규정

▌개 요

-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 합의
-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은 협정문에, 각 품목의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에 규정
- 우리측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 조립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
  - ◦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합의
  - ◦ 부속서에 100개 품목(플라스틱, 고무, 철강, 가전, 시계, 가구 등) 규정

▌상세 내용

1. 원산지 일반 규정

가. 특혜 원산지 기준

■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 (제3.1조)

◦ 특정 상품이 완전생산기준 또는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및 협정문에 규정된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인정

– 부속서에는 품목별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의 실질적 변형기준을 규정

완전생산(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 기준

· 해당 제품의 전부를 완전히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주로 농·수산물이나 광물 등에 적용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

· 해당 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거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그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외국산 재료와 국산 재료를 혼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동 기준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공산품이 이에 해당

세번변경(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기준

· 재료와 제품의 세번(HS code) 변경 여부를 기초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 HS 2단위 변경기준(CC : Change of Chapter)이 가장 엄격하며, 4단위 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및 6단위 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은 완화된 기준

– 예 :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세번 변경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 해당 제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을 통해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

– 역내 부가가치 포함 비율을 산정하는 RVC(Regional Value Content)가 대표적 계산 방법

주요공정기준

· 해당 제품의 제조·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일부 섬유 또는 의류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

■ **완전생산기준** (제3.2조)

①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상품

※ 살아있는 젖소 송아지를 수입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이후 해당 소 또는 그로부터 획득한 육류를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불인정

② 양국의 영역에서 수렵, 어로 또는 양식을 통해 획득한 상품

※ 제3국 국적 어선이 양국 영역에서 어로행위 등을 통해 획득한 상품에 대해서는 양국의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

③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 꽃씨를 수입하여 재배 및 수확하여 꽃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인정

④ 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에서 그 당사국의 기국 선박의 어로행위 등을 통해 획득한 상품

⑤ 양국의 토양·바다·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추출된 광물 및 천연 자원

⑥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채취된 상품

⑦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공정 또는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의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역내가치비율(RVC : Regional Value Content) 계산 방법 (제3.3조)

◦ 부가가치기준 판단을 위한 역내가치비율 계산은 공제법(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하는 방법) 및 집적법(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부가가치가 높은 소수 원산지 재료와 부가가치가 낮은 다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특정 산업이 있다면, 공제법보다 집적법이 더 간편하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필요

공제법(Build-down Method)

$$\text{역내가치비율}(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FOB: *Free on board value of the good*

집적법(Build-up Method)

$$\text{역내가치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나. Roll-up 및 중간재 조항 (제3.4조)

■ 역내에서 생산되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제품(A)이 다른 제품(B)의 재료로 사용된 경우, B 제품의 원산지 판정시 A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를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s)로 인정

- 반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A)이 다른 제품(B)의 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B 제품의 원산지 판정시 A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는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s)로 인정

  ※ 여러 가공단계를 거치는 공산품의 경우, 동 조항에 의해 역내가치비율 계산시 원산지 재료의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짐.

다. 미소(De Minimis) 기준 (제3.7조)

-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의한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역외산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의 가치가 제품 가치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 인정

  ※ 미소기준은 원산지 판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부분 FTA에 반영

- 단, 우리측 민감 분야인 신선농산물(HS 1~14류) 및 섬유(HS 50~63류)에 대해서는 미소기준 비적용

  ※ 섬유(HS 50-63류)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역외산 직물(fibers) 또는 원사(yarns)의 중량이 총 중량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 인정

라. 대체가능 물품 및 재료 (제3.8조)

- 석유·고철 등과 같이 대체 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 및 후입선출법 등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 인정

  ※ 대체 가능한(fungible) 물품 및 재료 : 성질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목적상 서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 재료 및 물품

  ※ 선입선출법(first-in-first-out : FIFO) :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먼저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후입선출법(last-in-first-out : LIFO) : 나중에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나중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마. 기타 주요내용

- 누적(accumulation) 조항 (제3.6조)
  - FTA로 인한 시장통합 효과 제고를 위하여, 상대국 물품 및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물품 및 재료를 역내산(originating)으로 인정
- 세트(set) 물품 (제3.9조)
  -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물품의 가격이 전체 세트가격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간접 재료(indirect materials) (제3.13조)
  - 제품 생산시 사용되었으나, 최종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지 않은 연료, 도구, 장비 등의 간접재료는 원산지 판정시 비고려
- 직접 운송(direct transport) (제3.14조)
  - 양 당사국간에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를 인정
  - 단, 제3국을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①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있었고, ② 상업적 거래 또는 선적·하역·재포장 외의 추가적인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 인정

2.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주요 특징

- 우리측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 조립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

■ 완성차를 제외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입 및 글로벌소싱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승용차 : 역내가치비율 35-45%, 전기·전자·기계 : 대부분 4-6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비율 35-50%, 정밀·석유화학 : 대부분 4-6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비율 50%

■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하여 교역을 촉진

나. 주요 공산품 원산지 규정

품목	HS Chapter	원산지 기준
자동차	87	· 완성차는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 자동차 부품은 CTH 또는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전기·전자	85	· 대부분 품목은 CTH/CTSH 또는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 기타 전지, 녹음기, 램프, 전선 등은 CTH/CTSH 또는 RVC 50% 이상
기계	84	· 보일러, 터빈, 내연기관, 자동판매기, 주형, 베어링 등 : CTH 또는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 CTSH 또는 RVC 50% 이상 · 저울,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계산기, 전자수첩, 파쇄기 등 : CTSH
섬유 및 의류	50-60 61-63	· 견, 면, 모, 마 등의 사(yarn) 및 직물(fabric) : CTH · 인조 섬유 : 대부분 CC 또는 CTH ·의류 : CC ※ 기본적으로 원사기준(yarn-forward)이 적용되나, 포켓, 지퍼 등 악세사리의 경우 비적용 ※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스테이플 직물에 대해서는 염색·날염의 주요공정기준도 선택 적용
신발	64	· 기본적으로 CTH, 일부 품목에서는 RVC 50% 이상도 선택 적용 · 단, 역외산 갑피(upper)를 재료로 사용한 세번변경은 불인정
정밀화학	28-38	· 무기·유기화학물, 비료 등 : CTSH 또는 RVC 50% 이상 · 의약품, 화장품류 : 대부분 CTH
석유화학	27, 39, 40	· 석유, 광물 : 대부분 CTSH 또는 RVC 40% 이상 · 플라스틱·고무 등 : CTH

품목	HS Chapter	원산지 기준
철강	72-73	· 철강 : 대부분 CTSH · 철강제품 : 대부분 CTSH 또는 RVC 50% 이상
비철금속	74-81	· 동·니켈·알미늄·아연·주석 등 : 대부분 CTH

※ RVC :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CC : 2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다. 주요 농·수산물 원산지 규정

품목	HS Chapter	원산지 기준
농산물	6-14	· 채소, 과일, 견과류, 곡물 등 : 완전생산기준(역내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 · 수목, 커피·차, 맥아, 전분, 종자, 사료 등은 CC ※ 역외산 쌀·보리·옥수수 및 감자 등을 수입하여 가루·펠리트 형태로 수출시 원산지 불인정 ※ 역외산 씨, 뿌리, 뿌리줄기, 접지, 싹 등을 수입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원산지 인정
축산물	2, 4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 완전생산기준(역내에서 나고 자란 동물로부터 획득) · 낙농품, 조란, 천연꿀 등 : CC(역내 동물로부터 획득한 것)
수산물	3	· CC : 실질적으로 완전생산기준
가공 농·수산물	15-24	· 주류·담배 등 : CTH, 기타 : CC, CTSH 등

3. 개성 공단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합의

◦ 부속서에 규정된 100개 품목(플라스틱, 고무, 철강, 가전, 시계, 가구 등) 적용

4 원산지 절차

▌개 요

■ 원산지 절차는 원산지 증명 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및 원산지 검증 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

◦ 원산지 증명은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 등에 대해 “자율증명”을 허용하고, 5년 경과 이후에는 전면 자율증명으로 전환

※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자율증명” 제도를 규정한 협정 제4.1조 및 제4.6조 대신 “기관증명” 방식 및 “인증수출자” 제도를 규정한 부속서 4A가 적용되고, 5년 이후부터 제4.1조 및 제4.6조 적용(제4.13조 이행조항)

◦ 원산지 검증은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방식을 모두 채택

▌상세 내용

1. 원산지 증명(proof of origin) 방식 : 기관증명 → 자율증명

■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에 대해 “자율증명”을 허용(부속서 4A 규칙 1 및 4)

※ 기관증명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수출국의 관계당국이 발급(부속서 4A 규칙 2)

◦ 인증수출자 제도는 당사국 국내법에 따라 운영되며, 양국 관계당국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교환하고 인증수출자를 감독

■ 협정 발효 5년 이후에는 전면 "자율증명" 제도로 전환

※ 자율증명 : 원산지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수출시에 발급 (제4.1조)

■ 원산지 증명서 양식은 양국이 모두 부속서에 규정된 동일한 양식을 사용

한 · 미, 한 · EU, 한 · 페루 FTA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한·미 FTA	한·EU FTA	한·페루 FTA
제도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 자율증명
증명서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국 관세당국이 지정하는 인증수출자	수출자 및 생산자 (자율증명)

2. 특혜관세 신청절차 기타 사항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 (제4.3조)

■ 원산지 증명서 면제 (제4.2조)

◦ 통관 가치가 미화 1천불 또는 수입국이 정하는 그 이상의 금액 이하인 경우 및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불요

■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제4.5조)

◦ 수입국 법령에 규정된 기간 또는 수입일 이후 1년 이내

■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그 효력 불인정 불가 (제4.7조)

◦ 수입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수입자는 통보 접수일부터 30일 내에 원산지 증명서 수정본을 제출

※ 특혜관세 신청절차 관련 조항은 한·미 및 한·EU FTA의 내용과 대부분 유사하며, 수입신고시 특혜관세 신청원칙,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 정정 신고제도 및 특혜관세 사후 신청제도 등과 같이 이미 국내적으로 시행중

3. 원산지 검증 (verification)

■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을 모두 채택 (제4.8조)

※ 직접검증 :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verification visit) 등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증

※ 간접검증 :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수출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

◦ 단,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 등의 직접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세관당국이 반드시 관여(자료 요청 및 방문조사 동행)

한 · 미, 한 · EU, 한 · 페루 FTA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한·미 FTA	한·EU FTA	한·페루 FTA
직접검증	원칙적으로 간접검증, 단 수출국 관세당국 동의시 공동검증 가능	직접검증 및 간접검증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제4.6조)

◦ 우리의 관세부과 제척기간(5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 증빙서류 : 수출물품의 구매·가격·평가지불에 관한 서류, 원재료의 구매·가격·평가지불에 관한 서류,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증빙서류 등

◦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비용부담 및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방식으로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전자방식 보관에 관한 근거는 국내법에 기반영된 사항(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5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개 요

■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 법령의 공표 등 세관행정의 투명성 증대, 원산지 등의 사전판정제, 관세 문제 관련 처분에 대한 재심절차 보장, 통관 관련 교환된 정보의 기밀유지 및 사용제한, 양국간 관세협력 강화 및 관세·원산지·무역원활화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

▌상세 내용

1.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 신속한 물품반출을 통한 양국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당사국의 간소화된 통관절차 유지 의무 규정 (제5.12조)

◦ 물품 도착 후 가능한 48시간 이내 반출, 수입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

■ 특급탁송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속 통관절차 유지 의무 (제5.11조)

※ 우리나라는 특급탁송화물(DHL, Fedex 등)에 대한 간이통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착 후 2시간 30분 이내에 통관 완료

■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위험 화물은 중점 검사하되, 저위험 화물은 통관 및 반출 절차를 간소화 (제5.9조)

※ 현재 우리 관세당국은 화물위험관리시스템(Cargo Selectivity System)을 개발하여 화물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검사하는 제도를 운영중

2. 세관행정의 투명성 증대 (제5.10조)

■ 세관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관세 법령 및 관세행정 절차의 공표를 의무화

◦ 이해관계인의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안내창구(inquiry point) 운영 의무

◦ 관세 법령 및 관세행정 절차의 중요한 개정사항은 상대국 관세당국에 적시에 통보토록 노력

※ 현재 우리 관세당국은 관세법령과 행정규칙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고 있고, 관세청에 콜센타를, 각 세관관서에 민원전담창구를 설치·운영 중

3.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 (제5.7조)

■ 품목분류 및 원산지 등에 관한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생산자의 의문사항에 대해 수입국 관세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 제도 규정

◦ 수입국 관세당국은 사전판정 신청자로부터 서면으로 요청을 받은 후 1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FTA 특혜관세 신청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특히 영세 중소무역업체의 특혜관세 활용을 제고시키는 효과 기대

4. 관세 문제 관련 처분에 대한 재심(review) 절차 보장 (제5.6조)

■ 원산지, 특혜관세 등 수입·수출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자(수입자 등)에 대한 행정·사법적 재심 절차 보장 의무

◦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수입국에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원산지 소명자료는 제품원가 등 기업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수출자 및 생산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기 곤란하므로 수입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자료를 제출한 수출자 및 생산자는 수입국에 제출된 자료의 기밀보호 요청 가능

5. 정보의 기밀유지 및 사용제한

■ 당사국은 통관 및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 교환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며, 특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 (제5.19조)

◦ 개인정보는 정보 접수국이 제공국에서와 동일한 방식의 정보 보호를 보증하는 경우에만 제공

■ 제공된 정보는 통관 및 무역원활화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여타 목적을 위한 정보 활용은 정보를 제공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제5.20조)

◦ 다만, 관세 법령 위반에 관한 사법 또는 행정 절차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 이용 가능

6. 관세협력 강화 (제5.13조)

■ 통관 문서 조화, 세관분석 기법 조화, 세관 전문가 교환, 공동훈련 프로그램 개발, 통관 단계에서의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집행 강화 및 화물 보안 등과 관련한 관세협력

7. 관세 · 원산지 · 무역원활화 위원회 (제5.25조)

■ 원산지 규정(제3장), 원산지 절차(제4장) 및 관세행정·무역원활화(제

5장)의 이행 및 그 적용에서 발생하는 사안의 검토를 위해 관세·원산지·무역원활화 위원회(Customs, Origin, and Trade Facilitation Committee) 설치

6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개 요

-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확인하고, 양자간 정보교환 및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
- 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SPS 위원회 설치
- 양국간 SPS 관련 분쟁은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재하고,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상세 내용

1. SPS 챕터의 목적 (제6.1조)

-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면서 SPS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 SPS 사안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며, 양자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

SPS 조치
·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질병, 오염물질 관련 규제 등)

2. WTO SPS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 확인

-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제6.3조)하고, 양국간 SPS 조치 관련 분쟁은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용(제6.8조)

3. 동등성 (제6.4조)

- 수출국이 자국의 SPS 조치가 수입국의 적정보호수준을 충족한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SPS 조치를 자국의 SPS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

  ※ WTO SPS 협정 제4조를 재확인

4. 위험평가 (제6.5조)

- WTO SPS 협정 제5조(위험평가)를 준수하면서, 상대국의 위험평가 요청을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 노력

5. 병충해 무 · 저발생 지역의 인정 (제6.6조)

- WTO SPS 협정 제6조의 지역화(병충해 무·저발생 지역) 개념을 인정
  - 수출국은 병충해 무·저발생 지역의 객관적인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입국에 제공
  - 상대국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

지역화(Regionalization)

-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는 국가라도 일부 지역에서 무·저발생 상태가 유지될 경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검역·관리하도록 한 WTO SPS 협정의 원칙
- 병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방역기술 중의 하나로서 대다수 회원국들이 활용하여 왔으나, UR협상 이후 국제 무역 규범화
- WTO SPS 협정 제6조는 지역화 인정시 고려요소(지리,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및 방역관리의 유효성 등) 및 수출회원국의 병충해 무·저발생 지역 증명을 위한 증거 제시 의무 등을 규정
- 관련 국제기구(OIE, IPPC) 및 WTO SPS 위원회는 지역화 인정을 위한 평가절차 및 기준 등 세부 기준 제정
  - OIE(세계동물보건기구) 및 IPPC(국제식물보호협약)는 "지역"개념을 농장단위(OIE: 구역(compartment), IPPC: 재배포장(production site))까지 구체화

6. SPS 위원회 설치 (제6.7조)

■ 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아래의 기능을 갖는 SPS 위원회를 설치

- ◦ 동 챕터의 이행 과정 모니터링
- ◦ SPS 조치의 투명성 추구 및 정보교환 촉진
- ◦ SPS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적용과 관련된 기술 협력 활동 촉진
- ◦ 각국의 SPS 조치와 관련하여 상호 이해 증진
- ◦ SPS 사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
- ◦ 국제 기준, 지침 적용에 대한 상호 협력
- ◦ 양자간 합의된 안건 논의

■ 위원회는 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개최하며, 다른 합의 사항이 없을시 매 2년마다 개최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개 요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등이 양국간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규정
-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기술협력, 정보제공 및 양국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BT 위원회 설치

▌상세 내용

1.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제7.7조)

- 제·개정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안)을 WTO에 통보시 동시에 상대국에도 통보하도록 함.
- 국제표준과 부합하는 경우에도 양국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는 상대국에 통보토록 함.
- 상대국에 통보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안)에 대해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 부여
  - 당사국은 제출된 중요한 의견에 대한 회신 또는 그 요약본을 인쇄본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

※ 60일 기간(WTO/TBT 권고사항) 확보를 통해 양국간 기술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의견제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미 FTA, 한·EU FTA에도 기규정)

※ 우리나라는 TBT 통합포탈정보사이트(www.knowtbt.kr)에서 TBT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

■ 상대국 요청시, 채택되었거나 진행중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목적, 법적 근거, 정당성 등 정보를 제공

※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기술규정이 채택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무역기술장벽 완화에 기여(통상마찰 사전 예방효과 기대)

■ 기술규정 위반으로 수입항에서 통관보류시 수입자에게 통관보류 사유를 즉시 통보

2. 국제표준 (제7.4조)

■ 당사국은 WTO TBT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국의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국제표준에 기반

◦ 국제표준의 존재 여부 판단은 WTO TBT 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표준 개발원칙에 근거

※ WTO의 TBT 위원회는 국제표준의 개발원칙으로서 합의성, 공정성, 공개성, 통일성, 시장적합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을 채택(G/TBT/9, 부속서4, 2000.11월)

3. 기술협력 및 지원 (제7.8조)

■ 당사국은 인적자원의 교육을 포함하여 표준화,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기술지원

■ 한쪽 당사국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규정을 다른쪽 당사국이 새로 도입하고자 할 때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 제공 등 협력(단, 기밀 정보는 제외)

4. 기술규정의 동등성 (제7.5조)

■ 상대국의 기술규정이 자국과 다른 경우에도 자국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달성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토록 함.

◦ 수용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 요청시 그 사유를 설명

※ WTO/TBT(제2조제7항)에서도 기술규정의 동등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5. TBT 위원회 설치 (제7.9조)

■ 동 챕터의 이행 감독,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TBT 문제의 신속한 처리, 표준·기술규정·적합성평가절차 분야 기술협력 강화, 상호인정협정(MRA) 협상 촉진, 정보 교환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양국간 TBT 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년마다 개최

※ TBT 위원회 조정기관 : 우리측 기술표준원 및 페루측 통상관광부

8 무역구제

▌개 요

■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하되,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은 유지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

▌상세 내용

1. 양자 세이프가드 (Section B)

■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의 결과로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like or directly competitive)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serious injury or threat)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까지 관세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

◦ 원칙적으로 협정발효 후 10년 동안 양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되,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상품의 경우 관세철폐기간 종료 후 5년까지 발동 가능

◦ 양자 세이프가드 발동기간은 2년이며, 2년간 연장 가능(연장기간을 포함하여 4년이 최대 한도)

■ 산업피해의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일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보상·보복 규정을 도입하여 FTA 무역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양자세이프가드 남용을 방지

2. 다자 세이프가드 (Section A)

■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보유하되,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의 동시 발동은 금지

■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의 수출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국 수출품을 발동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면제 가능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Section C)

■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산업피해 구제 수준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을 적용토록 노력

※ 최소부과원칙 :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는 덤핑 마진 또는 보조금 마진이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lesser duty)까지만 부과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절차 투명성을 강화

◦ 상대국과 관련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시 상대국에 통지하고, 질의서, 주요 수출기업 및 생산업체 목록 제공

◦ 상계관세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통보 및 협의 기회 부여

4. 무역구제 협력체제 구축 (Section D)

■ 양국간 무역구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무역구제 문제발생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반덤핑 제로잉금지, 최소부과원칙 등 WTO 다자간 협상 이슈에 대한 상호 협력기반 마련

9 투 자

▌개 요

■ 협정 구성 : 3개 Section 및 관련 부속서

◦ Section A :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및 이를 보호하여야 할 투자유치국 정부의 의무 및 예외

◦ Section B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 Section C : 정의(definition)

◦ 부속서 : 협정의 예외적 사항을 주로 규정
– 수용 부속서, 단기세이프가드 부속서, 국공채 부속서 등

※ 투자 및 서비스 분야 유보(비합치조치 : non-conforming measures)는 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별도의 부속서로 작성

■ 협정 적용범위 : 투자와 관련한 당사국의 모든 조치

◦ 당사국에는 당사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비정부기관도 포함

◦ 이 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 및 행위 또는 발효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한·미 FTA 및 한·EU FTA와의 자유화 수준 비교

◦ 한·미 FTA와 비교시 협정문은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하여 우리 투자자 진출 및 보호의 기반을 마련한 한편, 개별 유보를 통해 우리의 민감한 분야인 농축산물 관련 유통 및 저장, 방송·통신, 전문가(법률, 회계, 세무)등의 분야는 개방 수위 조절

◦ 한·EU FTA의 경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이 제외되었으므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 EU 법체계상 투자보호 관련 협상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아닌 개별 회원국이 보유

▌상세 내용

1. 협정상 의무

가. 내국민대우(NT : National Treatment) : 제9.3조

■ 외국투자자에 대해 유사한 상황(like circumstances)하에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 하며, 사실상(de facto) 차별도 금지

■ 진입단계의 투자(설립, 인수, 확장)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보장토록 하여, 기진입 투자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규정한 한·페루 투자협정(1994. 4월 발효)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를 규정

※ 투자보호의 대상인 '투자자(investor of a Party)'의 범위에 투자를 시도하는 자(seeks to make an investment)도 포함

나.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제9.4조

■ 상대국 투자 및 투자자에게 동종의 상황에서 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하며, 다른 협정에서 이 협정 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 협정의 당사국에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추가적 혜택이 부여

■ 이 협정에서는 아래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체결하는 FTA에만 MFN 대우를 부여 (미래 MFN)

◦ 우리 : ① 항공, ② 어업, ③ 해운, ④ 위성방송, ⑤ 철도 등

◦ 페루 : ① 항공, ② 어업, ③ 해운, ④ 문화산업 등

※ MFN 대우가 배제되는 분야는 유보에 명시되어 있으며, 한·페루 FTA 이전에 발효되거나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의 경우 모든 분야에 대해 일괄 유보하고,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서명하거나 발효된 경우에는 일부 분야에 대해 상기와 같이 별도 명시

다. 최소기준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 제9.5조

■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international customary law)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의미

라. 수용(Expropriation) : 제9.12조

■ 당사국은 ① 공공목적을 위해 ②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③ 신속·적절·효과적(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보상을 전제로 ④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 및 국유화 가능

■ 당사국은 또한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equivalent) 재산권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 제공 의무

※ "간접수용" : 직접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

-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은 우리의 모든 기체결 FTA 및 대부분의 투자보장 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

마. 송금(Transfer) 보장 : 제9.13조

■ 당사국은 출연금, 이익, 자본이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의 자유롭고 지체 없는(freely and without delay) 송금 허용 의무

◦ 단, 부도, 지급불능, 예금자 보호, 주식 등의 거래 이전, 형법의 적용, 규제당국의 법집행으로서 금융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 위한 경우는 예외

■ 송금보장 조항의 예외로서 외환위기 시 자본거래 통제 등 긴급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하고, 이를 단기세이프가드 부속서(Annex 9C)에 규정

바. 이행요건(PR : Performance Requirements) 부과 금지 : 제9.7조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관리, 실행, 운영, 판매, 처분 등에 관하여 아래 특정 이행의무의 부과 금지

◦ 일정 수준 수출, 일정수준 국산 구성요소 비율 달성, 국내 상품 사용, 수출과 수입 간의 연계, 수출과 판매 간의 연계,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등 7가지

– 단, 일정 수준의 수출,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의무는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부과 가능

※ 국산품 사용의무, 수출과 수입 간의 연계는 정상적인 국제교역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어 WTO에서도 관련 협정(TRIMs :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우리 기체결 FTA에서도 모두 금지

※ 우리나라는 과거에 국산품 사용의무, 국내인과의 합작의무, 생산물 수출의무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이행요건을 부과하였으나, UR 협상 준비과정에서 이를 모두 철폐

■ 그 외 일정 비율 내국인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연구개발 수행 등 다른 이행요건은 모두 부과 가능

◦ 또한 상기 금지된 이행요건도 ①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 공공정책적 목적의 경우, 또는 ② 유보(부속서)에 기재하는 경우 부과 가능

사.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국적제한 금지 요건 : 제9.6조

■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단,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요건은 부과 가능

2. 협정상 예외

가. 투자와 환경(Investment and Environment) : 제9.9조

-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은 외국인투자활동이 환경에 대해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규정

나.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 제9.14조

- 당사국은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방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방 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이 협정상 혜택을 부인 가능

다.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 : 제9.8조

- 특정 조치에 대한 협정상 의무의 예외를 아래와 같이 규정
  - 정부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비합치조치로서 부속서 I에 기재한 경우에는 ① 내국민대우(NT), ② 최혜국대우(MFN), ③ 이행요건(PR), ④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의무 면제 (현재 유보)
  - 부속서 II에 기재한 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에도 상기 4가지 의무 면제 (미래 유보)
  - 정부조달과 보조금에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관련 의무 면제

라. 대위변제(Subrogation) : 제9.15조

- 국가기관의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한 투자자가 상대국의 협정위반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 동 국가기관이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국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

3.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

가. 개요

■ 투자유치국 정부가 Section A의 협정상 의무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 제소 또는 국제중재 요청 가능

※ 페루의 국내법원이 아닌 ISD 절차를 선택할 경우, 중립성,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증대되어 우리 투자자 보호 가능성 제고

■ 이용 가능한 중재 기관·절차

◦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 ICSID : World Bank 산하 기구로서 회원국(우리나라와 페루 포함)에게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제공

◦ ICSID 추가절차규칙

※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절차의 관할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모국과 피청구국이 모두 ICSID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하는 등 협약 제25조에 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반면, 양국 중 일방이 ICSID 협약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 UNCITRAL : 국제무역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중재절차 및 규칙을 규정

◦ 기타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제3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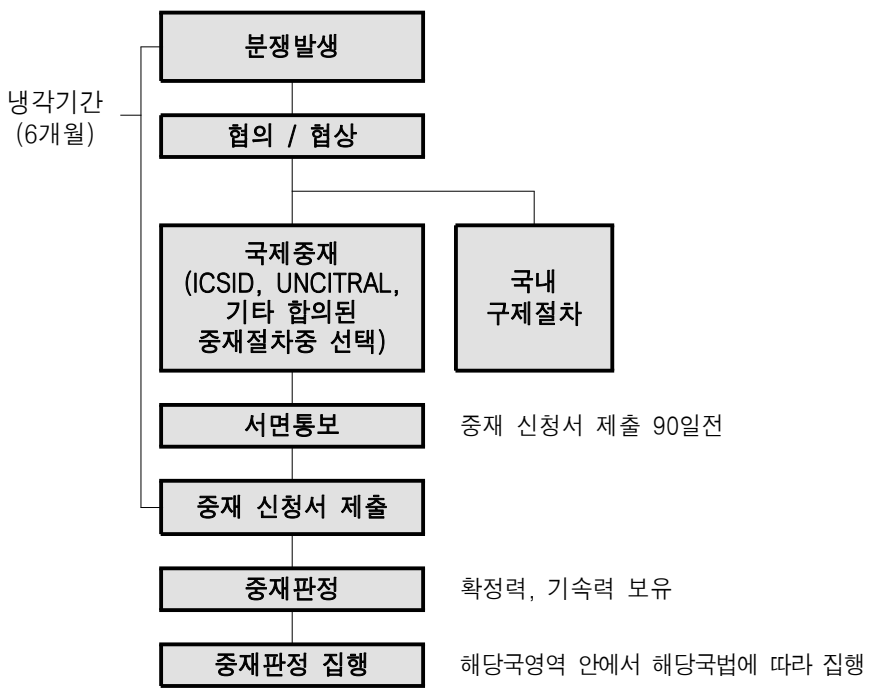
■ 국제중재판정의 효력

◦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binding and final)

※ 중재판정은 기판력이 없고 당사자간에만 구속

◦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와 적용 가능한 이윤 및 재산권의 복구만으로 한정

ISD 절차 개요



※ 투자유치국 정부의 위배조치로 투자자(또는 투자기업)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중재 신청 불가

나. 사전동의조항

■ 투자협정 체결의 핵심규정으로서 양 당사국이 본 협정을 체결을 통해 투자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함을 규정

※ 국제중재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중재관할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동의가 필수적임. 협정문에 피청구국의 사전적·일반적 동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가 중재청구를 제기하면 중재판정부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 보유

다. 국제중재와 국내제소 절차와의 관계

-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나, 일단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 이용 불가능 ("fork in the road")

  ※ 동 조항을 두는 이유는 동일한 사안이 국내법원과 국제중재에서 병행하여 진행될 경우 절차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이중의 보호를 부여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

- 상기와 같은 선택조항을 둠으로써, 투자 유치국 입장에서는 ISD 피소 가능성을 낮춤.

4. 용어 정의

가. 투자(investment)

-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며, 자본 또는 기타 자원의 투입,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성격을 가진 아래 자산을 의미
  ① 기업
  ② 지분, 주식, 기타 기업의 지분참여 형태
  ③ 채권, 회사채, 또는 기타 채무증서, 대부
  ④ 선물, 옵션, 그리고 기타 파생금융상품
  ⑤ 완성품인도, 건설, 운영, 생산, 양허, 수익공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계약
  ⑥ 지적재산권
  ⑦ 라이센스, 인가, 승인,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국내법에 따라 부여

된 권리

⑧ 기타 유형 또는 무형,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모기지, 유치권, 저당권 등 관련 재산권

※ 시장점유율, 시장접근권, 기대이익, 이윤창출 기회는 그 자체로서 투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각주 추가

■ 본 협정의 목적상 투자성격을 가지는 대부가 아니라면 순수하게 상업적 거래로 인한 대금청구권은 투자가 아님을 규정

나. 투자자(investor)

■ 일방의 국가, 공기업, 국민 또는 기업이 상대국 국가의 영토 내에서 투자를 실행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거나, 이미 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중국적자는 우월성·효과성(dominant and effective) 국적테스트를 통해 배타적인 일방의 국적자로만 간주

다. 협의 재조정(negotiated restructuring)

■ ① 그 채무상품의 조건상에 정해진 바에 따른 변경이나 개정, ② 포괄적 채무교환 또는 그 채무상품에 대한 미지불 부채의 총 액면가의 75%이상에 대해 소유주들이 동의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채무상품의 재조정(restructuring 또는 rescheduling)을 의미

5. 부 속 서

가. 수용 부속서 (Annex 9B)

■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간접수용의 판단 법리를 규정

■ 간접수용에 대한 국제중재 피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의 규제정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용에 관한 부속서를 두어 중재 재판부에 간접수용의 명백한 판정 지침을 제시

■ 주요 내용

◦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정책 조치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부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정책의 예로 '부동산정책 조치' 를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각종 부동산 정책관련 정부 규제권한 확보

◦ 간접수용 판단법리에 우리 대법원의 수용 법리상의 원칙인 '특별희생' 법리를 추가하여 "정부조치로 인하여 특정 투자자에게 공익을 위해 수인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것"을 정부조치의 성격을 심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규정

나. 단기세이프가드 부속서 (Annex 9C)

■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규정

■ 세이프가드 발동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몰수(confiscatory) 및 이중 환율제(dual exchange rate) 금지, 상업적·경제적·금융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 회피,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 등의 조건

※ 단, 필요시 페루측과 협의를 거쳐 추가연장 가능

다. 국공채 부속서 (Annex 9D)

■ 국공채(public debt)는 그 자체로 상업적 위험을 포함하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지연시 투자자의 권리 청구(claim)를 제한

■ 동 부속서는 페루·미국 FTA 상의 국공채 부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공채 투자 관련 투자자의 중재제기를 제한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 인정

◦ 당사국의 채무불이행시 투자자가 보상되지 않은 수용을 증명할

경우

◦ 채무 재조정(restructuring of debt)시 투자자와의 협의 재조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 당사국이 채무 재조정시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를 위반한 경우

10 국경간 서비스 무역

▌개 요

■ 협정문상의 주요 의무로는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MA) 제한조치 도입 금지, 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가 있으며, 그 외 투명성 제고, 자격상호인정, 지불 및 송금 등을 규율

■ 협정문의 적용범위

◦ 양국간 서비스 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모든 조치

- 단, 금융서비스, 항공운송 관련 서비스, 정부조달·정부보조금·정부권한 행사 서비스 등은 제외

※ 금융 서비스 및 정부조달은 별도 챕터에서 논의하며, 항공 관련 서비스 중 '항공기 유지·보수, 항공 관련 판촉,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는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

※ 시장접근, 투명성, 국내규제 조항은 투자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도 적용

※ 국경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간 서비스공급(제10.13조)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토 내로의 서비스 공급(국경간 서비스 공급, Mode 1)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토 내 그 당사국의 인(人)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人)에 대한 서비스 공급(해외소비, Mode 2)
-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자연인의 이동, Mode 4)

▌상세 내용

1.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4대 일반적 의무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제10.2조)

◦ 동종의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제10.3조)

◦ 동종의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시장접근(Market Access) 제한 조치 금지 (제10.4조)

◦ 서비스 공급자의 수, 서비스 총 거래액 또는 자산총액,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총 산출량, 고용되는 자연인의 총수, 서비스 공급자의 법적 형태(법인, 자연인 등)를 제한하는 조치 금지

■ 현지주재(Local Presence) 의무 부과 금지 (제10.5조)

◦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요건 혹은 거주 요건 요구 금지 의무

※ 단, 이러한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 조항(제10.6조)에 의거하여 부속서 유보목록에 기재 가능(Negative 방식)

※ 한·페루 FTA의 서비스분야는 한·미 FTA에서와 같이 Negative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유보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4대 일반적 의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기타 규정

■ 투명성 제고 (Transparency) (제10.7조)

◦ 서비스 관련 법규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 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를 설립·유지

◦ 서비스 관련 법규의 입법·개정 등 추진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 공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기회 제공

◦ 동 챕터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관련 최종 규정의 공표와 발효일간에 합리적인 기간 부여

■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제10.8조)

◦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투명한 기준에 근거하도록 노력

■ 자격상호인정(Recognition) (제10.9조)

◦ 여타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특정국 서비스공급자의 교육·자격·면허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국에게 유사한 협정 체결 협의 기회 또는 자국의 교육·자격·면허가 인정될 수 있도록 설명할 기회 제공 의무

■ 지불 및 송금 (제10.12조)

◦ 당사국은 국경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할 의무

◦ 단, ①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②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유통 또는 거래, ③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④ 형사범죄, ⑤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공평·비차별·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송금 또는 지불의 금지 또는 연기 가능

3.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 부속서 (Annex 10A)

■ 양국은 각각 자국내 관련기관이 전문직 서비스공급자의 면허·인증 관련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기준을 개발하고 상호인정 관련 권고를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에 제공하도록 독려

◦ 공동위원회는 동 권고 접수후 합리적 기간내 검토하고, 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양국은 자국내 주무당국이 그 권고를 상호 합의한 기간내 이행토록 권장

※ 전문직 서비스 표준·기준 개발 가능 세부 분야
- 교육: 학교 또는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인가
- 시험: 구술시험 및 면접과 같은 대안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면허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 경력: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력의 기관과 내용
- 행동 및 윤리: 직업행동표준과 그러한 표준과의 비합치성에 대한 징계조치의 내용
- 전문성 개발과 자격증의 갱신: 전문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 교육 및 지속적 요건
- 서비스활동 범위: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 또는 한계
- 현지 지식: 해당 지역의 법률, 규정, 언어, 지형 또는 기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식 요건

11 기업인의 일시입국

▌개 요

■ 한·페루 FTA에서는 기업인의 일시입국(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에 대한 사항을 독립 챕터로 규정

※ 기업인(business persons): 상품무역, 서비스 공급, 투자 활동과 관련한 자연인

■ 일시입국 관련 일반원칙, 일반의무, 일시입국의허용, 정보제공, 분쟁해결 등 총 9개의 조항과 1개의 부속서(Annex) 및 3개의 부록(Appendix)으로 구성

◦ 부속서(Annex 11A)에서는 일시입국 종류를 상용방문자(Section A), 무역가 및 투자가(Section B), 기업내전근자(Section C), 전문가(Section D)로 분류하여 규율

◦ 부록(Appendix 11A-1)에서는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s) 관련 협정문의 적용을 받는 상업적 활동의 범주를 예시

◦ 부록(Appendix 11A-2)에서는 전문가(Professionals)의 양허직종을 나열

※ 전문가 : 계약서비스공급자(Contract Service Suppliers) 및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s)

◦ 부록(Appendix 11A-3)에서는 각 카테고리별 체류 가능 기간을 규정

▌상세 내용

1. 협정문 주요 내용

■ (일반원칙·일반의무) 동 협정에서 서비스·상품 교역 및 투자 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일시입국 관련 조치를 적용토록 하되,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구직자와 국적·시민권·영주권 획득을 위한 이민자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일시입국의 허용) 각 당사국은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business persons)에게 동 챕터에 따라 공중보건·안전·국가안보 등 관련 출입국관리법령을 준수할 경우 일시입국을 허용하여야 함.

◦ 단, 기업인이 취업 예정지에서 진행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혹은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사람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입국서류 발급 거부 가능

■ (정보의 제공)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 챕터에서 규정된 일시입국의 요건과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 공표하고 자국 및 상대국 영역내에서 이를 이용 가능

■ (실무작업반) 양국은 이 챕터의 이행, 운영을 위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동 작업반은 출입국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

■ (분쟁해결) 양국은 이 챕터에 따른 일시입국 허용 거절에 관해, ①그 사항이 반복된 관행(pattern of practice)과 관련이 있고, ②가용한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이 협정의 분쟁해결규정(23장)에 의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 주무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일시입국 당사자가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2. 일시입국 대상자 구분 및 입국허용 기준 (Annex 11A)

구분	내용
Section A: **상용방문자** (Business Visitors)	· 협정문 부록(Appendix) 11A-1에 나열된 상용활동(business activities)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인 * 부록 11A-1(예시적 목록): 회의참석, 기술·과학·통계연구, 구매·생산관리, 마케팅 연구, 영업, 수출입통관 관련 자문, 제품 사후서비스 등 포함 · (일시입국허용) 출입국관리법령 준수, 상대국 국민임을 증명, 동 부록에 나열된 활동에 종사하고자 함을 입증, 현지 노동시장 진입 의지가 없음(상용활동의 주 수입원 및 주 영업소가 일시입국 허용국 영역밖에 있음)을 입증할 경우, 취업허가 획득 요구 없이 일시입국 허용 · 사전승인절차, 노동인증심사, 수량제한 부과 금지
Section B: **무역가 및 투자자** (Traders and Investors)	· 관리자나 임원 또는 핵심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상품·서비스 무역에 종사하거나, 상당한 자본을 투자 혹은 투자과정에 있으며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인 · (일시입국허용) 출입국관리법령 준수시 일시입국 허용 · 노동인증심사, 수량제한 부과 금지
Section C **기업내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	· 일시입국 신청 바로 전날까지 법인의 기업에 적어도 1년 이상 고용된 기업인으로서 그 법인의 자회사, 지점, 계열사 등으로 전근하는 고위간부·경영진·전문가 · (일시입국허용) 출입국관리법령 준수시 일시입국 허용 · 일시입국의 선행요건으로 노동계약승인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노동 관련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Section D: **전문가** (Professionals)	· 부록(Appendix) 11A-2에 나열된 직종에 종사하는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s) 혹은 **계약서비스공급자**(CSS: Contractl Service Suppliers) * 부록 11A-2 : 66개 전문가 양허 직종 명시 · (일시입국허용) 출입국관리법령 준수, 상대국 국민임을 증명, 입국목적 증명(서비스공급계약서 등), 전문가 자격요건(관련 학위 혹은 기타 자격증명서류)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일시입국 허용 · 각 당사국의 노동 관련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전문가(Professional) 자격요건 및 양허

■ 전문가 자격요건은 '최소 4년 과정의 고등교육 학위 소지 혹은 그와 동등한 자격(a post-secondary degree, requiring 4 years of study or the equivalent of such a degree)'으로 규정

◦ 계약서비스공급자(CSS)는 서비스 수출국 법인 소속 자연인

◦ 독립전문가(IP)는 서비스 수출국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자

■ 한·인도 CEPA에 이어 두 번째로 전문가 양허 범위에 독립전문가포함(총66개 직종)

◦ 다만, 불법체류 우려를 고려 당사국은 협정발효후 2년내 독립전문가가 이민법 위반시, 독립전문가의 계약상대방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수량제한·노동인증심사 권한도 확보

※ 한·인도 CEPA 전문가 양허

- (자격요건) 최소 3년이상의 학업을 요하는 전문분야에서 중등과정 이후의 학위 소지 혹은 그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자(학사학위·석사학위·박사학위 예시적으로 명시)
- (양허직종) 163개(엔지니어, IT전문가, 초·중학교 영어보조교사 등)

■ 부록(Appendix 11A-2)에는 상호 양허하기로 합의한 전문가 직종 총 66개 목록이 Section A(40개)와 Section B(26개)에 명시

◦ 동 66개 전문가 직종 모두 일시입국을 위해서는 상대국 출입국관리법령 준수, 국적증명서류와 서비스공급계약서 및 전문가 자격요건 관련 학위 혹은 기타 자격증빙서류 제출 필요

◦ Section A에 명시된 40개 직종은 협정문상 전문가 자격요건 적용

※ 예: 엔지니어, IT 컨설턴트 등 (생물학자·생화학자는 박사학위 소지자만 양허)

◦ Section B에 명시된 나머지 26개 직종은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페루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이민 관련 법·시행령·사증발급지침상의 해당 직종 관련 자격요건이 적용

※ 예: 컴퓨터 하드웨어 전문가,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통번역사, 요리사

12 금융 서비스

▌개 요

■ 한·페루 FTA 협상 타결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금융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량 증대 와 국내기업의 페루 시장진출 증가에 따른 현지 금융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남미 금융시장과 금융규제 및 감독 시스템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향후 우리 금융회사의 MERCOSUR, 멕시코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남미 금융시장 진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전세계 GDP의 약 2% 차지, 베네수엘라 등 몇몇 남미국가들이 가입을 진행중)

■ 금융서비스 분야는 우리는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페루는 미·페루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

※ 여타 남미국가에 비해 개방된 금융시장 및 보다 유연한 외국인 투자 제도를 갖춘 페루는 금번 FTA에서 선진국 수준의 개방을 약속

▌상세 내용

1. 적용 예외

■ 사회보장 서비스와 기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 정부 고유 기능에 대해서는 협정문의 의무적용 예외

◦ 공공퇴직제도(예: 국민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부로써 보장되는 서비스

◦ 중앙은행(예: 한국은행) 및 정부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금융기관(예: 정책금융공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 아울러 국가의 보증을 받거나 예산을 지원받는 업무와 서비스도 협정문의 의무적용을 배제

2. 건전성 조치

■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과 같은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 도입 가능

◦ 예금주와 주주의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제도

◦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등

※ 다만, 협정문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단 수단으로써 동조항의 남용은 금지

3. 신금융서비스

■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도모하는 한편, 신금융서비스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아래의 일정 조건하에서만 신금융서비스를 허용

◦ 국내소재 상대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및 지점을 통해서만 공급가능 (국경간 공급은 불가)

◦ 현행 국내 금융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

◦ 양국 금융당국이 신금융서비스를 개별 상품별로 심사하여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영이 가능

※ 신금융서비스 :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

※ 양측은 건전성 조치의 일환으로 신금융서비스 도입과 관련 일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확인

4. 국책금융기관의 취급 (협정적용 예외)

■ 국책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협정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정부 지원이 가능함을 유보안에 명시

◦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정리금융공사, 예보, 신보, 기보는 정부 자체의 기능으로 인정

◦ 특히, 정책금융을 수행하지만 소매금융업도 병행하는 5개 금융기관*도 한·페루 FTA 체결 이후에도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보 조치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한국주택금융공사

5. 금융서비스 분야 주요 유보

■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은 현재 허용수준에 한정하여 개방

◦ 별도로 국내에 금융회사(지점, 현지법인) 설립 없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국경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금융서비스(수출입 적하보험, 보험자문, 위험평가 등)에 한정

※ 양측은 상대국 금융기관이 국경간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인가(authorization)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

■ 외국금융기관 지점의 영업기금 해당 자산의 국내보유 의무

◦ 본점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국내보유 의무화

■ 외국은행 지점의 개별인가

◦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신설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

■ 증권· 선물시장의 설립 및 운용기관 제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KRX)에 한해 증권·선물시장의 설립 및 운용 가능

■ 원화현물환 중개사 제한

◦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현재와 같이 2개의 중개사만 원화현물환 중개 업무를 취급하도록 제한

■ 건전성 조치로 간주되는 유보사항 별도기재

◦ 한·미 FTA와 동일하게 건전성 조치로 간주되는 사항*을 별도로 유보리스트 서두에 기재

※ 보험 및 그밖의 금융회사의 영업제한(현행 관련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로 한정), 국경간 거래시 원화결제 금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 등

13 통 신

▌개 요

■ 서비스 교역의 토대가 되는 통신 서비스 관련,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개방하여 규제 권한을 최대한 확보

※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방송·통신 서비스 자유화 및 개방과 관련된 부분은 서비스/투자 챕터 및 유보안에 규정

▌상세 내용

1. 협정 적용범위 (제13.1조)

■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 망 또는 서비스 관련 그 밖의 조치 및 부가통신서비스 공급에 관한 조치 등이 적용 범위

◦ 방송서비스에 관한 조치는 적용 배제

2.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Section A)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단, 당사국은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 가능
  -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 접속을 위해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 사용요건, 통신서비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

3. 지배적 공중통신사업자의 의무 (Section B)

-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지배적 사업자가 다음 의무를 준수하도록 당사국이 보장 또는 적절한 조치를 유지
  - 공중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배적 사업자 그 자신 및 자회사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사업자에게 부여
  - 교차보조 행위 등 반경쟁 행위 금지
  - 상호접속을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망의 모든 지점에서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한 조건(기술표준·규격 등)으로 제공

  ※ 지배적 사업자(major suppliers):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시내통화의 KT나 이동통신의 SKT가 해당

  ※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와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를 공개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표준 상호접속 제안을 공개하도록 보장

4.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 관련 그 밖의 조치 (Section C)

- (규제기관의 독립성) 공중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규제기관이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동 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

- (보편적 서비스)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그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는 당사국이 규정할 권한 보유

  ※ 보편적 서비스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산간 오지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

- (허가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통신사업 허가절차 보장

- (희소자원의 분배) 주파수, 번호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조치는 시장접근 제한 조치로 간주되지 않으며, 당사국은 공중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정책 수립 권한 보유

- (통신 분쟁해결) 협정문상 규정된 사안에 대한 통신규제기관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 신청, 재심 청구 및 사법심사 요청 가능

- (투명성)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규정 제정 관련 의견 수렴 등에 있어서 국내 관련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 보장

14 서비스 · 투자 통합 유보

▌개 요

- 우리 유보안수 : 총 86개 (현재유보 44개, 미래유보 42개)
- 페루측 유보안 수 : 총 42개 (현재유보 26개, 미래유보 16개)

■ 페루는 페루·미국 FTA를 제외하고 페루가 체결한 FTA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투자 자유화

◦ 페루측 유보안의 개방분야에는 전기·가스·발전 서비스 등 국가 기간산업이 포함됨으로써, 우리 투자자 진출의 기반 마련

※ 페루는 전기·가스·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공공 서비스 분야 등 기간산업에 대한 자유화 수준이 우리에 비해 높음.

◦ 통신서비스, 해운서비스, 육로운송서비스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대체로 페루·미국 FTA상 유보안과 유사한 수준

■ 우리는 한·미 및 한·EU FTA에서 기 개방한 분야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자유화하였으나,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고 일부 분야의 개방수준을 조절

◦ 전기·가스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방송·통신 분야 등은 현행 법령 수준으로 유보하고 방송 분야는 현행 법령보다 더 제한적으로 유보함으로써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 유지

◦ 공교육(유·초·중·고),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미개방

▌우리측 유보 상세 내용

1. 투자 관련 주요 유보

가. 공공질서

■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이행요건 의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

나. 정부기관 보유 지분

■ 공기업 및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에 대한 권한 유보

◦ 단, 과거 민간 기업이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미적용

다. 정부 권한행사 서비스

■ 정부 권한행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필요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 유보를 기재

◦ 단, 우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동 유보 적용 제외

※ 정부 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 법집행, 교정서비스 등 정부가 비경쟁적, 비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2. 서비스 · 투자 공통 주요 유보

가.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 포괄 유보

■ 공교육(유·초·중·고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도·전기·가스·생활환

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미래유보)

※ 사회서비스 : 국민연금, 보건, 탁아 등

◦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관련법령의 수준에서 개방하고, 원격교육 분야는 소비자보호 장치 등 향후 제한조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포괄적으로 유보 (미래유보)

◦ 전기·가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및 산업환경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규제수준을 유보 (현재유보)

나.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무·회계·세무)

■ 외국법자문사 서비스의 경우 협정 발효후 2년내 국내 로펌과의 제휴를 허용하는 2단계 수준 개방

※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회계·세무 서비스는 페루에 우리와 유사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전문자격제도가 없음을 감안, 국내 자격 취득자로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현행법령 반영

※ 한·EU FTA 타결 대비, 회계·세무 관련 자문 및 사무소 개설 허용을 포함하는 개정 법령이 '10.11월 현재 국회 계류 중

법률 서비스(외국법 자문사) 단계별 개방 의미

· 1단계(발효시) : 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외국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 3단계 : 외국로펌과 국내로펌간 조인트벤처 사업체 설립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

다. 통신 서비스

■ 현행 통신 관련 국내법의 시장접근 제한사항을 현재유보에 기재

◦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을 현행 49%로 유지하였고, 한·미 및 한·EU FTA에서의 간접투자 개방은 미허용

※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의 간접투자 개방 약속
- 국내 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100%까지 허용(유예기간: 협정 발효 후 2년)
- 단, 핵심 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SKT는 간접투자 완화 대상에서 제외

라. 방송 서비스

■ 한·미 FTA 타결 이후 현행 방송 법규상 일부 시장접근 제한사항이 개선되었으나 향후 FTA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페루 FTA에서는 한·미 FTA보다 제한적으로 유보(현행 법규보다 강화된 제한 적용)

■ 또한 현재유보에서 기재한 제한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을 포괄 미래유보함으로써 향후 자율적 규제권한 확보

※ 방송 법규의 시장접근 제한사항 : 지상파, 위성방송, 유선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인·허가제도,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 방송쿼터 설정 등 (방송채널사업자(Program Provider : PP))

방송서비스 분야의 현재유보에 기재된 주요 시장접근 제한사항 비교

제한사항	한·미 FTA	한·페루 FTA	현행 방송법
외국인의 종편PP 및 중계유선 소유 제한	소유 금지	소유 금지	20%까지 허용 (제14조 제2항)
외국인의 보도PP 소유 제한	소유 금지	소유 금지	10%까지 허용 (제14조 제2항)
외국인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	33%까지 허용	33%까지 허용	49%까지 허용 (제14조 제3항)
1인의 지상파, 종편·보도PP 소유 제한	30%까지 허용	30%까지 허용	40%까지 허용 (제8조 제2항)

마.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 가입자 기반 비디오서비스(예: IPTV) 분야를 포괄 미래유보함으로써 자율적 규제권한 확보

  ※ 가입자기반비디오서비스(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당해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

바.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

-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발굴·평가·매매 등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 (미래유보)

사. 정기간행물의 출판·유통 서비스

-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 (미래유보)

- 신문을 제외한 여타 정기간행물의 경우 현행 법령상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인 50% 등을 현재유보에 기재 하는 한편, 페루 본사에서 편집된 내용일 경우 국내의 지사·지점이 이를 인쇄·유통할 수 있음을 명시

아.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 서비스

- 농·축산물의 국내 민감성을 반영하여 위탁중개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곡물, 곡분, 인삼, 홍삼을 미래유보하고, 도매 서비스 분야에서는 곡물, 곡분, 홍삼에 대해 미래유보

  ※ 곡물 : 쌀, 보리, 옥수수, 밀, 귀리, 수수, 메밀, 조 등

자. 농·수·축산물에 대한 저장·창고 서비스

- 저장·창고 서비스 관련 민감한 품목인 곡물, 곡분 및 축산물에 대해 미래유보

차. 육상운송 (여객·화물운송)

-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추후 국가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

- 화물운송 분야의 경우에도 동 분야에 대한 정부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화물 운송시장의 공급 과잉시 제반 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권한 확보

  ※ 육상운송에는 도로운송 뿐만 아니라 철도운송도 포함

카. 부동산 서비스

-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현재유보 기재를 통해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는 한편, 여타 분야(개발·임대·관리·공급)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 (미래유보)

  ※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등 "전문직 분야의 개방"이란, 외국인들도 국내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국내 자격증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파. 건설·건축설계·각종 엔지니어링 서비스·수의 서비스

-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현행 법령상 규정에 따라 사무실 구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확인

타. 시장접근(MA) 의무 적용 범위 상향조정

- 시장접근 의무 관련 양측은 최소 GATS 양허안 수준 이상의 개방을 보장하면서, 그 이상의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명시

15 전자상거래

▌개 요

-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무관세 유지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인증 및 디지털 인증서 관련 조항 규정
- 전자상거래의 초국경적 성격을 감안,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 정보 교환 및 다양한 협력 활동 규정

  ※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하며, 기술 발달에 따라 범위가 확산되는 추세

▌상세 내용

1. 온라인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제14.4조)

- 전자적 수단을 통해 수·출입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무관세 유지
  - 단, 이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세나 기타 국내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배제되지 않음을 확인

  ※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 :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위해 전자적으로 부호화되고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 등

  ※ 온라인 전송물은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국제적으로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1998년 제2차 WTO 각료회의(제네바)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선언”가 채택되어,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이러한 결정의 효력을 연장
- 한·미 FTA, 한·EU FTA 등에도 규정

2. 전자인증 및 디지털 인증서 (제14.8조)

■ 전자적 거래 인증 당국 간 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상대국이 발급한 디지털 인증서 인정을 위해 노력

3. 기타 협력 사항

■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성·기만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정보 교환 (제14.5조)

■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법령을 채택·유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 교환 (제14.7조)

■ 종이없는(paperless)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당사국은 전자적 형태의 무역행정문서*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법적 효력을 종이문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 노력 (제14.6조)

※ 무역행정문서 :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 중 정부에 의해 발행 또는 관리되는 문서를 지칭하며, 원산지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

■ 기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법·규정·프로그램 관련 정보 및 경험 교환, 민간 영역이 행동수칙, 모범 계약, 지침 및 집행 매커니즘을 채택하도록 장려, 전자상거래 관련 지역·다자 포럼에서 적극적 참여 등을 규정 (제14.9조)

16 경쟁정책

▌개 요

■ 경쟁챕터의 목적, 경쟁당국 및 경쟁법 유지 등 이행 의무, 통보·협의·기술지원·비밀이 아닌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한 경쟁당국 간 협력, 국경 간 소비자 보호, 공기업 및 지정독점기업에 대한 국내 경쟁법 적용 등을 규정

▌상세 내용

1. 목적 및 이행

■ 경쟁챕터의 목적을 경쟁 제한적 행위(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로 인한 무역자유화 혜택의 훼손 방지로 규정 (제15.1조)

※ 경쟁 제한적 행위는 ① 경쟁제한적 목적 또는 효과를 지닌 사업자 간 합의 또는 사업자단체의 결정, 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③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하는 사업자 간 기업결합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국 경쟁법에 따름 (제15.11조)

※ FTA 체결로 인해 상품·서비스의 무역 자유화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카르텔 행위 등을 빈번히 자행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경쟁법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역자유화 효과가 반감될 것임

■ 상기 목적을 위해 각 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이행 (제15.2조)

◦ 경쟁법 및 그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유지

◦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

◦ 경쟁법 집행시, 경쟁당국은 투명성, 시의 적절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 원칙 준수

※ 경쟁법은 한국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및 페루의 '반경쟁행위억제법', '전기분야반독과점법'을 의미

2. 경쟁당국 간 협력

■ 양 당사국은 경쟁법 집행의 효과성 제고 및 FTA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쟁당국 간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 통보·협의·기술지원·공개 가능한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 및 정책 이행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 (제15.3조)

■ 통보 (제15.4조)

◦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당국의 집행 행위는 가급적 초기 단계에 상대국 경쟁당국에 통보

■ 협의 (제15.5조)

◦ 양 당사국의 상호 이해 증진 또는 경쟁챕터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국 요청시 협의 개시

◦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상대국의 우려 사항을 충실하고 호의적으로 고려

■ 정보제공 및 기밀유지 (제15.6조)

◦ 경쟁법 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주거나 당사국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상대국 경쟁당국의 정보 요청 시 당사국 경쟁당국은 해당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

◦ 경쟁당국은 비밀을 전제로 제공받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제공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어떠한 주체에게도 해당 정보의 공개 불가

■ 기술지원 (제15.7조)

◦ 경쟁법·정책의 이행 및 경쟁문화의 증진을 위해, 상호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 등의 기술지원 시행

3. 국경 간 소비자보호(Cross-Border Consumer Protection)

■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소비자보호법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양 당사국은 소비자보호법의 집행과 관련한 협의, 기술지원 및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협력(제15.8조)

※ 소비자보호법은 한국의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공정화법'과 페루의 '소비자보호법' 및 '불공정경쟁억제법'을 의미

4. 공기업 및 지정독점 (제15.9조)

■ 각 당사국은 공기업 및 지정독점의 설립·유지 가능

■ 단, 당사국은, 해당 기업의 공공업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기업 및 지정독점이 경쟁법의 적용을 받고,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제한적 행위를 채택·유지하지 않도록 보장

17 정부조달

▌개 요

■ 양국간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함에 따라,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미가입국인 페루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 페루의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 약 56억불(GDP 8%, 공기업 포함, 군사·안보 관련 조달 제외)

WTO GPA

· 정부조달의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한 WTO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으로 우루과이 라운드(1994)에서 여타 WTO 협정과 함께 서명되어 1996.1.1 발효

· 현재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41개국이 가입(우리는 1997.1.1 발효)하였으며, 페루는 미가입국

· 동 협정 가입국은 부속서의 자국 양허표에 개방범위(양허기관 및 양허하한선 등)를 기재하고, 적용대상 조달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등 협정상 의무 부담

■ 정부조달 일반원칙 및 절차 등의 협정문은 WTO GPA 개정 협상에서 2006.12월 잠정 합의된 개정 GPA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GPA 미가입국인 페루도 정부조달 절차 진행시 우리 기업에 대해 GPA 가입국 수준의 의무 부담

■ 양국은 중앙정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500만 SDR (약 229억원) 이상의 민자사업 시장을 상호 개방

▌상세 내용

1. 정부조달 일반원칙 및 절차

가. 개 요

■ 협정 적용대상 조달(covered procurement)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의 사용, 대응구매(offset) 금지 등의 **정부조달 일반원칙**(제16.3조)과 가액산정(제16.1조제5항~제8항), 공고(제16.5조), 참가조건(제16.6조), 입찰서류 및 기술규격(제16.7조), 기간(제16.8조), 입찰절차(제16.9조), 전자경매(제16.10조), 개찰 및 낙찰(제16.11조), 정보공개(제16.13조) 및 공급자 이의신청 절차(제16.14조) 등의 **정부조달 절차**가 적용

※ 한·페루 FTA 정부조달 챕터의 대부분 절차조항은 WTO GPA 개정 협상에서 2006.12월 잠정 합의된 개정 GPA 내용과 유사한 수준

협정 적용대상 조달(covered procurement) : 제16.1조제2항

·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은 상품 및 서비스를,
① 부속서에 양허된 조달기관(정부기관 및 공기업 등)이,
②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가 아닌 자기 소비를 목적으로,
③ 구매,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 등의 계약을 통해,
④ 부속서에 양허된 양허하한선(threshold) 이상의 금액으로, 조달하는 경우

나. 조달국 내에서의 과거 조달실적 요구 금지 등 (제16.6조)

■ 조달기관이 입찰 참가자격 심사 및 낙찰시 공급자에 대해 조달국 내에서의 과거 조달실적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

■ 조달기관은 공급자의 입찰 참가자격 심사시, 조달국 내에서의 영업활동 뿐 아니라 조달국 밖에서의 영업활동을 기초로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기술적 능력을 평가

※ 동 조항은 한·미 FTA에 이어 한·페루 FTA에도 규정되었으며, 페루 정부조달 시장에 참가 경험이 없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진입장벽이 제거되었으며, 특히 우리 건설업체들의 페루 시장 진입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

다.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 촉진 (제16.17조)

■ 양국은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환 및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노력

◦ 양국 중소기업간의 공동 입찰참여 촉진

라. 정부조달위원회 (제16.19조)

■ 정부조달 챕터의 이행 평가 및 기타 양국간 협력을 위하여 정부조달위원회(Committee on Procurement) 설치

마. 협정적용 예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조달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조달 등은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WTO GPA 및 기체결 FTA 우리 양허표상의 예외를 유지 (부속서 16A Section A)

■ 정부조달의 민감성 및 국가정책 수행 측면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국방, 안보, 공공안전, 보건 등과 관련된 부분은 협정적용의 예외를 인정 (제16.2조)

■ 한·미 FTA 및 WTO GPA 개정협상 우리 양허안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급식 예외 규정을 한·페루 FTA에도 포함 (부속서 16A Section G)

◦ 정부 예산으로 구매하는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 농산물 우선구매가 가능

※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시 우리 농산물의 우선 구매가 GATT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05.9월) 이후, 이를 정부조달 예외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 제기

2. 정부조달 시장 개방

■ 양국은 WTO GPA 우리나라 양허수준으로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

◦ 단, 중앙행정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는 9만5천 SDR로 양허 확대

한 · 페루 정부조달 양허 비교(부속서 16A)

단위 : SDR (1 SDR = 1,525.27원)

구분			한국	페루
중앙정부기관	양허 기관		중앙행정기관 41개	중앙행정기관 62개
	양허하한선	상품	9만 5천 * 발효후 5년간 5만	9만 5천
		서비스		
		건설서비스	500만	500만
지방정부기관	양허 기관		지방자치단체 15개	지방행정기관 25개
	양허하한선	상품	20만	20만
		서비스		
		건설서비스	1,500만	1,500만
기타기관(공기업)	양허 기관		공기업 18개	공기업 22개
	양허하한선	상품	40만	40만
		서비스	추후 개방 * 개정 GPA에서 양허할 경우,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양허	40만 * 발효 5년후, 한국측 미양허시 페루측도 양허 정지
		건설서비스	1,500만	1,500만

※ 우리의 양허기관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한·미 FTA에서의 우리 양허기관 범위와 동일하며, 지방행정기관 및 공기업의 경우 WTO GPA 현재 우리나라 양허 범위와 동일

WTO GPA 및 기체결 FTA, 한·페루 FTA 양허하한선 비교

단위 : SDR (1 SDR = 1,525.27원)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기타기관(공기업)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GPA	13만	13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한-칠레	5만	5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5만	미양허	1,500만
한-싱가폴	10만	10만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미양허	1,500만
한-미	7만	7만	500만	미양허					
한-EU	GPA와 동일								
한-페루	9만5천	9만5천	500만	20만	20만	1,500만	40만	페루측 40만[주]	1,500만

3. 민자사업

가. 민자사업 양허 범위

■ 양국은 부속서 16A에 양허한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정부기관의 1,500만 SDR(229억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개방(제16.1조제3항 및 부속서16B 제1항~제3항)

※ 민자사업 :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인천공항고속도로, 부산신항만 건설 등이 대표적인 예

※ 국내 민자사업 시장은 현재 국내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1항)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등 모든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개방

한 · EU 및 한 · 미 FTA와의 민자사업 양허수준 비교

구분		한·EU FTA	한·미 FTA	한·페루 FTA
양허 하한선		1,500만 SDR	500만 SDR	1,500만 SDR
양허 기관	우리	중앙정부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양측 모두 중앙정부기관	양측 모두 중앙정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상대국	중앙정부기관 및 모든 단위의 지자체		

나. 민자사업 절차규범

- 민자사업 관련 절차규범은 협정 부속서 16B에 비차별의무 및 일부 투명성 관련 의무(입찰 및 낙찰 공고, 이의신청절차)만을 규정하고, 그 외 민자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절차는 각자 국내법 적용

- 국내 민간투자법상 중소기업보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호조치 규정 명시 (부속서 16B 제9항)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1조2항은 주무관청은 시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

18 지적재산권

▌개 요

-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 양측은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한국 : 82개, 페루 : 4개)를 상호 보호
- 지재권 보호와 관련 정보 교환 및 다양한 협력 활동을 규정

▌상세 내용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7.7조)

- 저작권(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기존 50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또는 창작) 이후 70년으로 연장
  - ◦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발행 또는 창작 시점 기준)의 보호기간도 70년으로 연장
  - ◦ 단, 우리측은 협정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둠

    ※ 한·미 FTA, 한·EU FTA에서도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2.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제17.5조)

유전자원(Genetic Resource) 및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 유전자원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가운데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물질을 의미(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전통지식 : 일반적으로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원주민 또는 공동체에 의해 수대에 걸쳐 소유되고 계승되는 지식을 총칭

- 양국은 기존 관련 협정(WTO TRIPS 협정, CBD(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 등을 언급한 2001년 WTO도하각료선언을 인정
- 생물다양성 및 전통지식의 중요성, 전통지식에 대한 토착민들의 기여 등을 인정
-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에 기반을 둔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 공유 노력
-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향후 국제법 또는 양측 국내법 발전 동향에 따라 추가 논의

3. 지리적 표시 (제17.6조)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 (WTO TRIPS 협정 제22조)

- 양국은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한국 : 82개, 페루 : 4개)를 자국법에 따라 상호 보호
  - ◦ 단, 동 규정이 양측이 기체결한 FTA 상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

※ 양측의 주요 지리적 표시
- 우리: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진도홍주 등
- 페루: 페루 피스코, 출루카타스 도자기, 쿠스코 옥수수, 이카 파야르 콩

우리 기체결 FTA 지리적표시 보호 현황

구분	한·칠레 FTA	한·EU FTA	한·페루 FTA
우리	3	64	82
상대국	3	162	4

■ 협정발효 후에도 양국 합의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 추가 가능

4. 국경 조치 (제17.9조)

■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가 권한 있는 당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 통관 보류는 권리자의 요청 없이 권한 있는 당국의 직권으로도 가능

※ 상기 내용은 한·미 FTA, 한·EU FTA에도 기규정
- 한·EU FTA는 국경조치 적용대상에 식물신품종, 등록디자인, 특허침해상품도 포함

■ 상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된 사실을 권한 있는 당국에서 확인시, 권리자에게 탁송인, 수입자 및 수탁인의 이름, 주소 등을 통보

5. 협력 (제17.10조)

■ 지재권 보호 및 집행과 관련된 정보 교환, 기술혁신 관련 협력, 지재권 보호 관련 교육, 연수, 특허기술, 식물신품종보호 등 다양한 협력 활동 규정

19 노 동

▌개 요

■ 양국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교역관계 형성을 위해 국제노동기준 준수 및 노동법의 효율적 집행 등을 규정

◦ 한·미 FTA와는 달리 노동 챕터를 이 협정의 분쟁해결절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양국간 실무 협의 및 노동협의회 개최를 통한 협정문의 원만한 이행 강조

▌상세 내용

1. 기본노동권 (제18.1조)

■ 당사국은 '1998년 ILO 선언'상의 아래 원칙(기본 노동권)을 국내법 및 관행에 채택·유지 노력

◦ ①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②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③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④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철폐

※ 단, 상기 4개 "기본 노동권" 관련 아래 8개 핵심협약 비준을 의무화 하는 것은 아님

※ 결사의 자유(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아동노동 금지(제138호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제182호 가

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 강제노동 금지(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고용차별 금지(제100호 남녀동등 보수협약, 제111호 고용·직업상 차별금지 협약)

2.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 (제18.2조)

■ 기본노동권 관련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

◦ 당사국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한 양국간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노동법 효과적 미집행 금지

■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기본노동권 관련 국내 노동법 조항 적용예외(면제 및 이탈) 금지

3.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제18.3조)

■ 당사국은 노동법상 이해관계자에게 노동법 집행에 대한 행정·준사법·사법 재판소에 대한 접근 보장

◦ 당사국은 재판소의 공정성, 공평성, 투명성 보장

4. 노동협의회 (제18.4조)

■ 양국은 상호 관심사항의 논의 및 이 챕터의 이행 감독을 위해 "노동협의회(Labor Affairs Council)"를 설치

◦ 협정문 발효 후 1년내 회의 개최(그 이후는 필요시 개최)

※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는 일방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우선 실무급 협의를 실시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협의회 소집 요청 가능 (제18.6조)

5. 고용 · 노동 분야 협력

■ 동 챕터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노동당국간의 다양한 협력활동을 부속서(Annex 18A)에 규정

◦ 노사관계, 인적자원 개발·관리, 사회안전망 등 분야 학술교류, 세미나/워크샵 개최 및 기술협력 사업 추진 등

20 환 경

▌개 요

■ 무역정책과 환경정책의 상호 보완성(mutual supportiveness) 추구를 위해 환경 보호 수준의 지속적 향상 노력 및 협력 등을 규정

◦ 단, 환경보호 수준과 환경개발 우선순위 선정 및 환경법·정책의 채택·수정 관련 각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협정문상 분쟁해결절차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하여 환경주권 침해 우려를 불식

▌상세 내용

1. 일반 원칙

가. 일반 규정 (제19.1조)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제무역을 증진

※ 지속가능발전 : 현세대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 사회 전 분야에서 각종 개발에 앞서 환경친화성을 먼저 평가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제대로 보존된 환경 속에서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브룬트란트 보고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1987)

■ 상호 보완적인 무역 및 환경정책의 추구 및 지속가능발전의 목적에 따른 적절한 자원 사용 등

나. 환경보호 수준의 지속적 향상 (제19.2조)

■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 설정 및 환경법·정책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나, 환경보호 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

다. 환경에 유익한 무역 (제19.4조)

■ 당사국은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관심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작성 합의

환경 상품 및 서비스(EGS :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WTO DDA, APEC 등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EGS에 대한 관세·비관세 논의가 진행 중이나 그 범위에 대해 국가간 상당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의는 없음.

· 환경상품의 경우, 환경오염방지 제품에 대해서는 이견은 별로 없으나, 저비용·고효율 제품, 환경보호 외의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제품, 제조과정 및 공법상의 환경부하가 낮은 제품 등에 대해서는 이견 존재

2. 주요 협력 분야

가. 생물다양성 (제19.6조)

■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요소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의 중요성을 인정, 이를 장려하기로 약속

■ 자국 천연자원에 대한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 및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당사국의 권한 인정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 토양·해상 및 그 밖의 수중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원천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체 및 이들이 속한 복합적 생태계 간 다양성을 의미(종내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 포함)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기타 기원의 물질(즉, 유전물질)로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것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나. 기후변화 (제19.8조)

■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가 공동 관심사항임을 인정, 이를 제한 또는 감소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모색하는데 동의

다. 환경기술 (제19.9조)

■ 유독성 화학물질 배출 저감기술을 포함한 청정기술의 개발·보급·접근·사용·적절한 관리 및 유지를 모색하는데 동의

라. 환경영향 검토 (제19.13조)

■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검토,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해 노력

마. 기타 협력

■ 기타 동 챕터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부속서(Annex 19A)에 규정

부속서 주요내용

· 환경 챕터의 지속가능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협력분야 예시
  - FTA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관리
  - WTO, UNEP, 다자환경협약 등 국가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이슈 논의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협력
  - 에코라벨링, 녹색조달 포함 공적·사적 친환경인증제도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력 등

3. 환경협의회 (제19.10조)

■ 양국은 상호 관심사항의 논의 및 이 챕터의 이행 감독을 위해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를 설치

◦ 협정문 발효 후 1년내 회의 개최(그 이후는 필요시 개최)

※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는 일방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우선 실무급 협의를 실시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협의회 소집 요청 가능 (제19.12조)

21 협 력

▌개 요

■ 경제협력의 목적, 범위, 방법 및 협력메커니즘을 규정하고, 개별 협력 분야를 세부 조항에 명시

※ 협력 챕터는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 배제

■ 양국의 10개 관심분야(중소기업, 어업·양식, 관광, 산림, 에너지·광물,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술, 해양 운송, 문화, 농업)에서 다양한 협력활동 및 양국간 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양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계기 마련

▌상세 내용

1. 중소기업 협력 (제20.4조)

■ 양국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 강화

◦ 민간분야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간 대화, 정보 교환, 교육 프로그램 교환 등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

◦ 협력 분야에는 환경 관리, 정보 및 통신 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의 분야를 포함

2. 어업 및 양식 협력 (제20.5조)

- 어업 및 양식 분야의 발전을 위해, 양국은 연구개발, 정보교환, 인력교류, 파트너쉽 구축 등을 통해 협력
- 이 협정 발효후 협상이 시작되는 수산협력약정을 통해 당사국의 법과 규제에 합치되면서, 양국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최적화된 활용 지원
  ※ 양국은 협정 발효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약정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3. 관광 협력 (제20.6조)

- 양국은 관광당국간 협력 강화, 관광 관련 정보교환, 양국간 항공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협력

4. 산림 협력 (제20.7조)

- 산림자원의 관리,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제반 협력 사항을 규정
  ※ 페루는 세계 10대 산림강국으로서, 향후 양국간 산림분야 협력강화 기대
- 양국은 임산물의 가공, 공급 및 교역, 임업생태 기술개발 및 산림 생태계 보존, 조림 및 목재 가공업에 대한 투자 활동 등에 대해 협력

5.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제20.8조)

- 원유, 가스 및 광물자원 탐사, 개발, 생산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활동의 개발 및 촉진을 규정
  ◦ 특히, 양국은 양국간 에너지·광물의 교역 관계의 촉진을 위해 협력
- 에너지·광물 자원에 대한 입찰, 투자기회, 지질 데이터 정보, 관련 법령 등 에너지·광물 분야의 공개 정보의 교환 촉진
- 양국간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규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국에 사전 통지

- 상대국 요청시,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 관련 모든 규정에 대해 정보 제공

6. 해운 협력 (제20.11조)

- 해상운송 및 물류서비스 정보교환, 항만운영·인력·기술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의 해운 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운물류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7. 문화 협력 (제20.12조)

-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시청각 공동제작 촉진을 위해 양국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동 협정은 체결시 한·페루 FTA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물에 대해서는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우리 시청각제작물의 페루 진출 지원에 긍정적 효과 기대

8. 농업 협력 (제20.13조)

- 대규모 열대농장 농작물 연구, 소규모 농업개발, 지속 가능한 농업개발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를 위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교역에 대한 정보 교류 촉진 등을 규정

9. 협력위원회 설치 (제20.14조)

- 협력 챕터의 이행 감독 및 평가, 양국간 협력활동에 대한 권고 등을 위해 양국간 협력위원회 설치

22 투명성

▌개 요

■ 투명성 분야는 우리 국내법상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위주로 구성

■ 한·미 FTA 내용과 유사하나,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정

▌상세 내용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법령 및 일반적 적용 행정결정 **공표** (제21.1조)

■ 협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국에 **통보** (제21.2조)

◦ 모든 조치와 관련, 상대국 요청시 관련 정보 제공

■ 행정절차의 직접 대상이 되는 상대국 이해관계인에게 절차 개시시에 절차의 성질, 법적 근거 및 쟁점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의견 개진 기회 부여 (제21.3조)

■ 협정과 관련한 행정조치에 대해 행정적 및 사법적 검토 및 재심의 절차 보장 (제21.4조)

23 협정의 운영

1. 공동위원회 (Joint Commission)

- 양국 통상장관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설치
-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을 감독하고, 협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작업을 감독하며,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고, 필요시 협정상 권리 및 의무의 개정 여부를 검토
- 정기회의는 매년 양국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하되, 어느 한 쪽 당사국 요청시 특별회의 개최

2. 협정 조정자 (Agreement Coordinator)

- 각 당사국에 의해 지정된 협정조정자는 공동위원회 회의 준비, 공동위원회 결정 후속조치, 분쟁해결 패널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제공 등 수행
- 양국간 연락 촉진을 위하여, 협정조정자는 양측의 접촉처 역할 수행

24 분쟁해결

▌개 요

■ 분쟁해결절차는 WTO 협정 및 기체결 FTA의 분쟁해결절차와 유사하게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공동위원회 개입 → ③ 패널 설치 → ④ 패널 보고서 제출 → ⑤ 패널 보고서의 이행 및 보상 → ⑥ 혜택의 정지"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규정

■ 다만,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였으며, 그 시한을 여타 협정에 비해 짧게 설정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

◦ '부패성 상품' 등의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축 시한 적용

◦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규정하여, 분쟁이 패널 절차 이전에 정치적 협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유도

◦ 패널이 최초 보고서(initial report)를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 보고서(final report)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분쟁해결기간 단축

◦ 패널 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패널보고서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불이행시의 보상 및 혜택정지(보복) 절차를 상세히 규정
– 다만, 패널 판정의 구체적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양 당사국이 우선적으로 합의하도록 규정하여, 당사국의 재량권 유보

■ 서면자료 제출, 심리 절차, 입증책임 등 패널의 세부 절차사항은 부속서(모범절차규칙 : Model Rules of Procedure)에 별도 규정

▌상세 내용

1.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범위

■ SPS, 경쟁정책, 노동, 환경 및 협력 챕터를 제외한 모든 협정문에 적용

■ 비위반제소 제외

※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 GATT 제23조 제1항에 제소 원인의 하나로 규정된 것으로,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방 당사국의 조치로 인해 타방 당사국에게 협정의 체결로 발생한 합리적 기대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nullification or impairment)된 경우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제안 단계에 있는 조치(proposed measure)는 패널 절차 대상에서 제외

2. 포럼의 선택 (제23.3조)

■ 한·페루 FTA와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여타 무역협정(WTO 협정 등)에 동시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소국은 양 협정의 분쟁해결절차 중 선택 가능

◦ 일단 해당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설치 또는 한·페루 FTA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해결절차 완료 전까지는 다른 쪽 분쟁해결절차 이용 불가

3. 당사국 간 협의 (제23.4조)

■ 제소국의 협의 요청시, 요청 접수일 이후 30일 이내에 협의 개최

◦ 협의 기간은 요청 접수일 이후 60일로 제한

4. 공동위원회 절차 (제23.5조)

■ 협의를 통해 분쟁 미해결시, 제소국은 한·페루 FTA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의 개입 요청 가능

◦ 공동위원회는 요청 접수 이후 10일 이내에 개최

5. 패널 절차 (제23.6조~제23.15조)

■ 협의 및 공동위원회 절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분쟁 미해결시에는, 제소국은 패널 설치 요청 가능

■ 패널은 패널 구성 이후 120일 이내에 패널보고서 제출

패널 구성

· 패널은 3인의 패널리스트로 구성
· 3인 중 2인은 각 당사국인 1인씩 지명하고, 패널 의장인 나머지 1인은 양 당사국이 합의
· 양 당사국이 미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4인의 예비명단을 제출하고, 패널 의장은 그 2부의 예비명단(8인)에서 추첨으로 선정

긴급 사안(urgent matters)에 대한 분쟁해결기간 단축

1. 긴급 사안의 정의(각주 1)
   · 농·수산물을 포함, 짧은 기간에 그 품질 또는 현재 상태를 상실하는 부패성 상품
   · 가까운 미래의 특정일 이후에는 그 무역 가치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2. 분쟁해결기간 단축
   · 협의 개최 시한 : 협의 요청 접수일 이후 30일 → 15일(제23.4.4(a)조)
   · 협의 기간 : 협의 요청 접수일 이후 60일 → 25일(제23.4.9조)
   · 공동위원회 개입 기간 : 공동위원회 최초 개최 이후 20일 → 10일(제23.5.5조)
   · 패널보고서 제출 시한 : 패널 설치 이후 120일 → 80일(제23.13.2조)

6.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보상 (제23.16조~제23.18조)

- 패널보고서는 당사국에 구속력이 있으며, 패널보고서가 조치의 위반을 판시한 경우에는, 피소국은 위반성(non-conformity) 제거 의무
-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접수 이후 15일 이내에 분쟁해결방법 및 그 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에 합의
  - 미합의시, 피소국은 패널보고서에 규정된 권고 및 이행기간을 준수
- 피소국이 이행기간 내에 합의된 분쟁해결방법 또는 패널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소국은 제소국과 보상 협의 개시

7. 혜택의 정지 (제23.19조~제23.20조)

- 제소국은 아래 사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 협정에 의해 피소국에 부여된 혜택을 정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통보 30일 이후에 혜택 정지 개시 가능
  - 보상 협의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미합의
  - 보상에 합의하였으나 합의 후 20일 이내에 피소국이 이를 미이행

25 예 외

1. 일반적 예외 (제24.1조)

■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 GATT 제20조상 예외 사유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 GATS 제14조상 예외 사유
-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안전, 사기 행위의 방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2. 안보 예외 (제24.2조)

■ 공개시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비공개 또는 접근 제한 가능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 또는 국제 평화 및 안보 관련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가능

3. 조세 예외 (제24.4조)

■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협정과 여타 조세조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

◦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민대우 조항은 일정 조건하에서 조세조치에 적용하고,

◦ 투자와 관련한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적용

※ 수용 관련 상세 내용은 투자 분야 참조, 조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부속서를 투자 챕터에서 채택

4. 국제수지 예외 (제24.5조)

■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 발생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제한 조치 가능

◦ 단, 그 조치는 비차별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

26 최종 조항

■ 협정의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및 각주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제25.1조)

■ 협정 발효 (제25.2조)

◦ 양국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

■ 협정 개정 (제25.3조)

◦ 양국은 협정 개정에 합의할 수 있으며, 개정은 양국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45일 이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

■ 협정 종료 (제25.4조)

◦ 당사국은 협정을 종료할 수 있으며, 상대국에 서면 통보 6개월 이후 협정 종료
– 단, 이 협정의 관세 양허는 협정 종료 이후 1년간 유효

■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 협정문이 모두 동등한 정본 (제25.5조)

◦ 단, 불일치시 영어본이 우선